# 营州 坚毕 处处日 AHE是 734

# - 2020년 <u>함</u>안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목 차〉

1.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감면 및 부과 부적정	1
2.	불법 전용농지 단속 부적정	7
3.	관광농원 사후관리 부적정	12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고사항 지도·감독 부적정	17
5.	야영장 미등록업체 불법 영업 관리 소홀	21
6.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부적정	24
7.	고충심사를 통한 근무성적평정점 소급 변경 후 승진임용 부적정 …	28
8.	면접시험 채점조서 오기로 합격자 변경 채용 부적정	41
9.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46
10.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52
11.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미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	63
12.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소홀	69
13.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 부적정	78
14.	○○○○ 장비운송차량 운영 부적정	82
15.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88
1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추진 부적정	95
17.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절차 부적정	99
18.	내정 소하천 사방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50
19.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참가자격 중복 제한 부적정 ······	103
20.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및 산림사업 감독 소홀	106
21.	신용카드 회계 처리절차 부적정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112
22.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계약 부적정	118
23.	디지털 항공사진 구매 계약 부적정	125
24.	도로개설공사 하도급관리 및 공사추진 소홀	132
25.	수도사업 인가절차 미 이행	138
26.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기성)처리 부적정	141
27.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 부적정	145
28.	사업 인·허가 등 부적정	157
29.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171
30.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79
3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적정	185
32.	○○ □□□□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193
33.	○○□□□□□ 부대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200
34.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등 운영 부적정	204

#### 【일련번호: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감면 및 부과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복구비 예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고, 다만, 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면적은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에서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청 고시 제2014-25호(2014. 3. 5.)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은 【표1】과 같다.

#### 【표1】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토석채취 기간에 따른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비고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따라서, 함안군은 산지전용 허가 시 동일인이 동일한 목적사업으로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다시 신청한 경우 연접한 산지의 전용면적을 합산하여 복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합산한 전용면적이 660㎡를 초과할경우 반드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할 복구비는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만 복구비용 산정액의 10~30%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매 1년마다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를 받아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산지복구비 감면 부적정

함안군 ○○○○파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목적사업 (단독주택)이 동일한 경우 연접한 부지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복구비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연접부지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허가면적만을 고려하여 복구비 감면 대상(개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잘못 판단하여총 18건 116,067천원의 복구비를 감면하는 등 복구비 예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2]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 감면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자	소재지	허가목적	허가기간	허가면적 (m²)	복구비 감면사유	미예치 복구비 (천원)	비고
	소	계(18건)					116,067	
1	000	00읍 00리 000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12,153	동일인의
2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2,857	○○○ 연접
3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개멸면석(660m²)석용│	10,895	
4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저/660m²\저요	11,044	
5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11,151	= 0.01
6	000	○○읍 ○○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11,790	동일인, 각각 연접
7	000	000 00읍 00리 000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12,686	1123
8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개변며서/660m²\저욧│	11,300	
9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면적(660m²)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106	
10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5,842	
11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월 건축어가에 따는    개벽면전(660m²)전용	5,458	동일인,
12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3,667	각각 연접
13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341	
14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4,673	동일인의
15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1,576	OOO 연접
16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m²)적용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2,367	
17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멸면석(660m²)석용	259	동일인의 ○○○ 연접
18	000	00읍 00리	단독주택		000	개별 건축허가에 따른 개별면적(660㎡)적용	7,902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나. 산지복구비 부과(과다예치) 부적정

함안군 ○○○○과에서는 【표3】과 같이 ○○면 ○○리 ○○○번지 ○○○ 등 51명의 산지전용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할 복구비는 위 산지전용 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미리 산정하여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 복구비용 산정액에 10~30%를 가산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청자들의 요청 없이 복구비용 산정액에 10~30% 가산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복구비 예치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총 212,633천 원의 산지복구비를 과다 예치하게 하였다.

### 【표3】산지복구비 과다예치 현황

(금액단위 : 천원)

				 대지	허가면적	기다 <b>점요 게사점</b>
연번	신청자	읍면	리	<u> </u>	] (m²)	허가기간 과다적용 재산정 과납액 비고 복구비 복구비
	소	<u></u> 계	(51건)			1,209,695,490 997,062,176 212,633,319
1	000	00	00	000	000	19,896,280 16,580,244 3,316,036
2	000	00	00	000	000	5,959,900 4,966,592 993,308
3	000	00	00	000	000	4,252,030 3,543,359 708,671
4	000	00	00	000	000	9,799,690 8,166,413 1,633,277
5	000	00	00	000	000	2,913,060 2,434,219 478,841
6	000	00	00	000	000	10,705,350 8,921,129 1,784,222
7	000	00	00	000	000	14,360,830 11,967,368 2,393,463
8	000	00	00	000	000	14,186,760 11,822,309 2,364,452
9	000	00	00	000	000	10,687,940 8,906,623 1,781,317
10	000	00	00	000	000	11,453,850 9,544,882 1,908,968
11	000	00	00	000	000	26,545,790 22,121,498 4,424,293
12	000	00	00	000	000	10,200,550 8,500,457 1,700,093
13	000	00	00	000	000	
14	000	00	00	000	000	5,636,000 4,696,669 939,331
15	000	00	00	000	000	3,030,000 1,030,003 333,331
16	000	00	00	000	000	
17	000	00	00	000	000	172,974,140 144,435,246 28,538,894
18	000	00	00	000	000	49,888,680 41,573,909 8,314,771
19	000	00	00	000	000	24,683,230 20,569,366 4,113,864
20	000	00	00	000	000	75,947,080 63,289,242 12,657,838
21	000	00	00	000	000	46,563,930 38,803,283 7,760,648
22	000	00	00	000	000	17,407,080 15,456,200 1,950,880
23	000	00	00	000	000	66,010,330 55,008,616 11,001,714
24	000	00	00	000	000	8,717,290 7,264,414 1,452,876
25	000	00	00	000	000	10,683,320 8,902,771 1,780,549
26	000	00	00	000	000	60,742,860 50,619,055 10,123,805
27	000	00	00	000	000	3,004,680 2,503,904 500,776
28	000	00	00	000	000	7,690,760 6,416,474 1,274,286
29	000	00	00	000	000	13,113,030 10,927,533 2,185,497
30	000	00	00	000	000	13,187,230 10,989,358 2,197,872
31	000	00	00	000	000	5,930,130 4,941,783 988,347
32	000	00	00	000	000	16,488,670 13,740,562 2,748,108
33	000	00	00	000	000	22,683,350 18,902,933 3,780,417
34	000	00	00	000	000	55,456,000 33,725,428 21,730,572
35	000	00	00	000	000	7,232,000 6,027,918 1,204,082
36	000	00	00	000	000	7,214,000 6,012,462 1,201,538
37	000	00	00	000	000	6,861,000 5,718,794 1,142,206
38	000	00	00	000	000	2,911,000 2,426,623 484,377
39	000	00	00	000	000	1,371,000 1,143,759 227,241
40	000	00	00	000	000	4,191,000 3,493,101 697,899
41	000	00	00	000	000	43,475,000 36,229,333 7,245,667
42	000	00	00	000	000	76,545,290 63,787,737 12,757,553

연번	신청자	소재지		소재지 허가면적 칭기기가		허가기간	과다적용 복구비	재산정 복구비	과납액	비고
인민	건경시	읍면	리	번지	(m²)	어기기신	복구비	복구비	피티크	미끄
43	000	00	00	000	000		44,625,140	37,187,617	7,437,523	
44	000	00	00	000	000		8,446,500	7,247,948	1,198,552	
45	000	00	00	000	000		14,355,600	11,963,099	2,392,501	
46	000	00	00	000	000		14,689,500	12,241,310	2,448,190	
47	000	00	00	000	000		19,957,000	16,630,871	3,326,129	
48	000	00	00	000	000		15,524,200	12,936,839	2,587,361	
49	000	00	00	000	000		45,478,300	37,898,602	7,579,698	
50	000	00	00	000	000		13,817,800	11,514,869	2,302,931	
51	000	00	00	000	000		65,231,340	54,359,455	10,871,885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 연찬부족과 업무 미숙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시 신청 전용면적이 660㎡이하로 신청되어 복구비예치시「산지관리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660㎡ 이하는 각각의 개별 신청 건인 복구비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복구비를 미예치 처리 하였으며, 복구비 과다 예치는 매년 재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나 민원편의를 위해 허가시 동의(구두상)된 것으로 준용하여 신청인의 서면 요청 없이 복구비 과다 예치 처리 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제46조를 위반하여 복구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하거나 과다하게 가산 예치를 받은 실무담당자 〇〇〇이과 지방〇〇주사 (현,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이과(현, 〇〇면) 지방〇〇서기 〇〇〇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산지전용허가(협의)시 부적정하게 감면된 복구비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오니 추가로 예치토록 하여 주시고, 신청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과다하게 가산예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불법 전용농지 단속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ㅋ)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관할구역 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허가취소, 공사 중단 및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은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당초 허가받은 사항의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원상 회복, 대집행, 허가취소, 공사중단 등의 시정 조치를 명하고, 행정처분과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하여 엄격하게 농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파에서는 【그림 1, 2, 3】과 같이 ○○○○허가를 받은 ○○○○이 허가받은 면적을 벗어나 공장주변 농지 4필지(○○면 ○○리 ○○○, ○○○, ○○○)를 불법전용하고 있음에도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전용된 농지 중 ○○리 ○○○, ○○○, ○○○ 등 3필지에 대해서는 2012년 불법전용으로 원상회복을 명(2012. 8. 13.)하였고 이후 2013년 농지 불법 전용으로 고발(2013. 1. 30.)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 ○먼지는 2011년 원상복구 후(2011. 2. 22. 원상복구명령) 다시 불법 전용되어(시기미상, 관계자 주장 - 2016년 경)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불법 농지 전용으로 원상회복명령과 2차례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위 기술내용과 같이 이 번 감사에서 적발된 불법전용 농지(4필지)도 과거에 불법 전용으로 적발된 후 원상 복구된 경력이 있는 농지이다.

따라서 함안군 ○○○○파에서는 ○○○○ 주변 농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법 전용 농지 조사는 물론 불법 전용으로 고발된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 불법 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그림1】○○○○ 불법 농지전용 현황

【그림1】○○○○ 불법 농지전용 현황						
2014년 항공사진	현재 항공사진(2017년 이후)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2】○○○○ 불법 농지전용 현장 사진						

### 【그림3】 ○○○○ 불법 농지전용지 위치

1			
1			
1			
1			
1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인허가 부서와 농지관리부서 사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업무공유 미비와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농지법 미숙지 및 인수인계 미숙으로 조사가 누락되었으며, 향후 담당자 인사발령시 인수인계 및 농지법(관련 지침) 숙지를 철저히 하여 농지전용 인허가 및 행정처분 농지 등에 대해 불법전용 여부 수시 점검을 통한 불법 농지전용을 차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농지법 시행령」제58조를 위반하여, 관할 구역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상태로 방치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소홀히 하여 연 2회 이상 제대로 조사도 하지아니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ㅇㅇㅇㅇ씨(현, ㅇㅇㅇㅇ) 지방ㅇㅇ주사 ㅇㅇㅇ, ㅇㅇㅇㅇ씨 ㅇㅇㅇㅇ 이이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불법 전용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시정" 촉구하오니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일련번호: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관광농원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핚안군(〇〇〇)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농원사업의 승인 및 안전·위생관리 등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1), 관광농원사업2), 주말농원사업3), 농어촌민박사업4)을 말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려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만 해당)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다

<sup>1)</sup>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sup>2)</sup>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sup>3)</sup> **주말농원사업** :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sup>4)</sup>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또한, 같은 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같은 법에 따른 규모나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설 및 운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관광농원사업 사후관리부분에서 시장·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 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제반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파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파에서 시행한 "2019년 하절기 농촌관광 관련 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알림(2019. 6. 5.) 및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 관련 시설 현장점검 실시계획 알림(2019. 12. 4)" 공문5)을 전 시·군에 시달하여,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시행한 바와 같이 매년 동절기, 하절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함안군은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점검을 하고, 시설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실태 외에도 사업취지 부합·건전운영실태,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계법령에위반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과에서는 199○년 승인받은 ○○관광농원(대표: ○○○) 이 【그림 1】의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이전 항공사진은 존재않음) 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관광농원 부지내에 자재 및 전신주를 야적하였

<sup>5)</sup> 합동점검 주요 점검사항: 안전관리(시설, 가스, 전기, 난방, 체험장비 등), 위생관리(식재료, 조리실, 종사자 등)

고, 감사일 현재도 여전히 자재 및 전신주를 야적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지일부(○○○, ○○○번지 일부 약 4,315㎡)를 관광농원사업 취지와 시설기준(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제공 시설)에 맞지 않게 장기간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설·운영 개선 명령을 하지 않고 관광농원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또한, 도 ○○○○ 공문에 따라 매년 하절기, 동절기 각각 1회씩 농촌관광시설 합동점검을 하면서 안전 및 위생관리 상태만을 점검하였고, 그 밖의 농촌관광사업취지 부합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운영 실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지침에서 정하는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관광농원 승인 내역

농원명(대표자)	위치(소재지)	지목	승인면적(m²)	부적합면적 (자재야적)	비고(주요시설)
	6필지		11,471	4,315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1,560		영농체험시설
○○관광농원 (○○○)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3,269	2,736	(필수시설)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3,021	1,579	
199○.○. 승인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2,104		음식물제공시설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304		
	함안군 ○○읍 ○○리 ○○○	유원지	1,213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림1】○○관광농원 항공사진

2008년 항공사진	2017년 항공사진
2000년 66시년	2017년 60위년
출처) 카카오맵 항공사진 재구성	
글시) 시기보다 ㅎㅎ시던 세   ㅇ	
【그림2】○○관광농원	현장사진(2020. 6. 3.)
	20 12(222) 31 31

출처) 함안군 현장확인 결과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자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연 2회 합동점검시에는 건물시설 화재 및 안전 관리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고, 야적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구두로 치우라고 했으며, 안전점검 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 관리를 했어야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관련 법 및 지침, 업무숙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시설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조치하고, 향후 운영실태 조사 및 재발방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농어촌정비법」제88조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관광농원사업 사후 관리부분)」를 위반하여, 관광농원 부지를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자재를 야적하고 있는데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〇〇〇의(현, 〇〇〇〇과) 〇〇〇〇 〇〇〇이 〇〇〇이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관광농원 부지를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중인 관광농원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시정" 촉구하오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일련번호: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고사항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파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및 회계감사, 후원금 모집 및 집행 등의지도·감독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지도·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 등 재산취득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취득보고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은 사회복지법인이 회계연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보고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자에서는 【표1】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가 2019. 2월 ○○○○○시설 사업장을 ○천만원에 임대(전세계약)하면서 재산을 취득한 재산을 지체 없이 법인재산으로 편입조치 해야 함에도 법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산취득상황을 익년도(2020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을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상황보고 지도·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표1】사회복지법인 관리카드(○○○○)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 대표자 : ○○○

○ 소 재 지 : 함안군 ○○면 ○○길 ○○

○ 설 립 일 : 201○. ○. ○. ○ 기본재산 : ○○.○○○천원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후원금 사용 및 결과보고 지도 감독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재무·회계규칙」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고,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라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에는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그 밖에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는 개선명령, 시설장교체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및 「재무·회계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함안군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회계연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결산서 등의 보고서류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가 2017년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당연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미숙과 부주의, 재산 취득사실 미인지,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로 발생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직원 교육과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분대로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함안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재산취득상황 보고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〇〇〇라(현, 〇〇과) 지방〇〇주사보 〇〇〇, 〇〇〇아(현, 〇〇면) 〇〇〇주사보 〇〇〇, 〇〇〇이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미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고, 사회복 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 : 5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야영장 미등록업체 불법 영업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OO군(\*\*\*\*\*과)

조 치 기 관 OO군(\*\*\*\*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OO군 \*\*\*\*\*과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장업을 등록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야영장을 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등록)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벌칙)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OOOO \*\*\*\*과에서는 2019. 8. 13., 2019. 11. 25. 야영장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등록야영 장 및 미등록 야영장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독려하는 공문서를 전 시·군에 시달하였다.

따라서, OO군에서는 야영장 등록업체 및 미등록업체가 법령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불법영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고,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해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OO군에서는 oooo 글램핑장이 0000. 0. 00. 폐업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OO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숙박사이트에 야영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글램핑장 홈페이지도 아직 운영되고 있다.

0000. 0. 0. oooo 글램핑장에 대한 현지 확인한 결과, 야영장 시설 등을 구비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0000. 0월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oooo 캠핑야영장은 매월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0000. 00월말까지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반기별점검결과도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OO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광담당직원의 잦은 전보로 인하여 업무 전반을 깊이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군청 문화관광홈페이지 내 게시물 등록·수정 및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폐업된 글램핑장의 홈페이지도 점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앞으로는 수시 온라인 검색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을 감찰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안

전·위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업무 숙련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00군수는

- ① 「관광진흥법」제3조, 제4조, 제20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야영장 미등록업체가 야영장 시설 등을 구비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고, 등록업체가 매월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실무담당자 @@과 지방\$\$\$ %%%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훈계)
- ②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시기 바라며, 야영장업 등록업체에게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부적정

소 관 기 관 OO군(\*\*\*\*과)

조 치 기 관 〇〇군(\*\*\*\*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OO군 \*\*\*\*과에서는 체육분야 육성을 위해 매년「OO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OO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청 및 고등학교 이하 16개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7조(보고 및 검사), 제10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OO군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

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체육꿈나무육성 지원 사업,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 및 농어촌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보조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OO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OO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실적보고), 제21조(정산검사), 제22조(감독)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아울러 2015. 2. 17. "시·군이 학교에서 채용하는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14-0791)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학교에서 비정규직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도서관 운영,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서교사를 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처럼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6)에

따른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근거해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OO군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OO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를 보조하되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된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받아 그 경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OO군 \*\*\*\*과에서는 「OO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 년부터 매년 OOOO고등학교에 OO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비 30,000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학교에서는 매년 보조사업비 중 10,000천 원을 OO축구부 감 독(기간제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이 내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매년 다음년도 1월 OO군에 제출하였다.

OO군 \*\*\*\*과에서는 법제처 질의 답변내용과 같이 학교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할 수 없으므 로 정산검사 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산검사 결과 적정함으로 보고 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OO군 \*\*\*\*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

<sup>6)</sup>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sup>2.</sup>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sup>2</sup>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sup>3.</sup>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sup>4.</sup>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sup>5.</sup>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sup>6.</sup>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는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사항은 인지하지 못하였고, OOOO고등학교 감독의 인건비는 비정기적 성격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무 담당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OOOO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당초 계획된 보조사업의 경비 부분 중 인건비에 대한 사항을 변경 신청토록 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OO군수는

- ① 「OO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 제7조, 제10조 및 「OO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하여 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경비가 적절함으로 보고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바랍니다. (훈계)
- ②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OO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를 보조하되 학교에서 채용한 비정규직 교사의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받아 그 경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징계·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고충심사를 통한 근무성적평정점 소급 변경 후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 지방○○○○ ○○○가 창원지방법원의 감봉처분취소 판결<sup>7)</sup>(2018. 1. 9.)을 근거로 징계로 인해 발생한 2017년 불이익 평정을 소급하여 무효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인사고충 심사청구<sup>8)</sup>를 하자, 해당 청구 건을 안건으로 2018. 1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2018. 11. 29. 인사고충 심사청구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부군수와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 후 [표1]과 같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소급하여 변경 입력함으로써 2018. 11. 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16위에서 3위로 조정하였다.

#### [표1]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입력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정 내역

성명	소 속 (직렬·직급)	평정대상기간	변경 입력일	근무성적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18. 11. 30. 기준)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000	0000 000 (000급)	2016. 11. 1.~ 2017. 4. 30. (2017년 상반기)	2018. 11. 29.	48.8	66.8	16위	3위	'19. 1. 9. ○○○급 승진의결

<sup>7)</sup> 창원지법 2017구합 〇〇〇〇

<sup>8) 2018. 11. 27.</sup> 접수 처리(〇〇과-32202호)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설치)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에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대상공무원이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재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

근무실적은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평위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에 분포비율9)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제출된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을

<sup>9)</sup>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 가(32점 미만) 10%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sup>10)</sup>,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sup>11)</sup>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9조 (명부의 효력),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정기평정일 기준일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는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시 부여한 가점·감점 사유가 소멸하거나 근무성적평정 이후 가점·감점 사유가 새로 발생하여 명부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명부를 조정하여 그 조정 결과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함안군의 2017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지침」 및 '근무성적평정 일정'을 살펴보면,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항목으로 근무실적 (50점)과 직무수행능력(50점)으로 구분하고,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시 감점 배점 기준12)등 5개 분야13)의 감점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고, 각 부서장은 2017. 4. 30. 까지 근무성적평정을 완료하고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5. 4.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평위는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5. 16.까지 결정, 조정한 후 5. 24.까지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sup>10) 「</sup>지방공무원 임용령」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고, 함안 군은 신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sup>11) 「</sup>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1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평정단위별로 설치

<sup>12)</sup> 중징계 5점, 감봉, 직위해제 4점, 견책 3점, 불문(경고) 2점, 경고, 훈계 1점(평정대상기간 중의 사항만 적용하되 처분시점을 기준)

<sup>13)</sup> 준법성(15점), 협조성(2점), 책임감(3점), 친절도(2점), 청렴도(2점)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 가산점으로 구성되며, ○급의 경우 최근 3년, ○·○급, ○○사, ○○사는 최근 2년, ○급 이하 는 최근 1년의 근무성적평정점수를 기간별로 균등하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림1]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 흐름



한편,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고충처리)와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과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적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기위하여 근무조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사실상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가 가능한 사항과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등은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하며, 결과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은 근평위에서만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은 평정자 (부서장)가 평정대상의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감점 요인일 뿐, 근평위의 평정점 심사·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는 감점기준이되지 않으므로 징계처분취소 판결을 근거로 평정점을 소급하여 변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함안군 〇〇과에서는 〇〇〇가 2018. 6. 18. 징계처분 취소에 따라 '인사불이익 회복 심사청구'업무보고를 제출하고, 2018. 7. 26. 다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첨부하여 인사 고충심사 청구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승진후보자 명부조정이 불가함을 구두로 답변하였음에도,

2018. 10. 31. 또다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1조에 의거 근무 평정에 '감점사유 소멸'을 근거로 '명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징계처분취소 판결확정'에 따른 소급효에 따라 징계처분에 기한 불이익 평정은 소급하여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사고충 심사청구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2018. 11. 28. 해당

청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간사 자격으로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경위', '청구인의 주장', '사실관계'와 더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주장을 검토한 결과,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평정단계와 확인자의 종합서열화과정의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판결의 취지가 징계자체의 원인무효를 결정한것도 아닐뿐더러,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감점을 부여하였으나 ○○○○○○○ 별도의 평정단위로 분류되어 있고, 당시의 평정자는 청구인에게 부서단위 평정순위 1위로 평정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종합평정서열 결정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2017년 상·하반기에 6개월 간의 근무실적과 업무추진능력, 대민업무처리능력, 직무수행태도, 기타 평정요소 등을 고려하여 "앙"과 "우"를 부여한 것이며, 근무성적평정이 종합평정으로서 모든 요소를 배제하고 유일하게 징계라는 요소가 당시 평정에 반영된 전부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법률상, 절차상 문제나 하자가 없음"을 보고하였으며,

"2017년 상·하반기 2차례 근무성적평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승진한 직원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행위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구로 반영할 수 없고, 함안군수가 근무성적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향후 인사운영과정에서 반영하여 줄것을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청구인의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함과 더불어 그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만 마땅함에도 2018. 11 .29. "2017년 상반기 평정등급 "양"이 징계로 인한사유 외에 이유를 찾기 힘들고, 2017년 하반기 평정등급 "우"는 징계에 의한 사유가아니어도 부여 가능하므로 인사위원회의 권고 중 2017년 평정결과 중 상반기의결과를 재조정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평정방법을 2017년 상반기 직전 2회의 평정 평균을 적용하여 [표2]의 내용과 함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13위에서

3위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인사고충 심사청구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작성하여 부군수와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 후, 2018. 11. 29. 당일 즉시 〇〇〇의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변경 입력하였다.

[표2] 인사고충 심사청구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상의 "최종 조정결과"

		현 재					조 정				
구분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2016 상반기	2016 하반기	2017 상반기	2017 하반기	2018 상반기	
점수	67.6	66	<u>48.8</u>	61.8	69.2	67.6	66	<u>66.8</u>	61.8	69.2	

그 결과, 2018년 하반기 근무성정평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이 당초 48.8점에서 66.8점으로 변경되어 반영됨으로써 당초 16위가 되었어야 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3위로 상승되었고, 해당 명부에 함께 등재되었던 ○○○ 등 13명의 명부 순위가 1순위씩 부당하게 하락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라 ○○○급에서 ○○○급으로의 승진예정 인원이 2명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명부 순위대로라면 승진후보자 배수 범위(10명)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16위 ○○○가 승진후보자에 포함되면서 당초 10위이던 ○○○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9. 1. 9.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시 ○○○가 승진대상자로 의결됨으로써 승진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2018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상 ○○○의 근무성적평정점 반영 내역

평정기준일	근무성적	덕평정점	만점
60기단크	변경 전	변경 후	Ľ D
2018.10.31.	68.8	68.8	70
2018.04.30.	69.2	69.2	70
2017.10.31.	61.8	61.8	70
2017.04.30.	48.8	66.8	70
총평정점	<u>61.15</u>	66.65	70

# [표4] 2018년 하반기 ○○○급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내역

			변경 전	<u>1</u>						변경 후	5		
순		총		평정점=	수 명세		순		총		평정점=	수 명세	
위	성명	평정 점수	근무 성적	경력	실적 가산점	가산점 기타	위	성명	평정 점수	근무 성적	경력	실적 가산점	가산점 기타
1	000	97.83	67.65	30.00	0.18	0.00	1	000	97.83	67.65	30.00	0.18	0.00
2	000	97.73	67.55	30.00	0.18	0.00	2	000	97.73	67.55	30.00	0.18	0.00
3	000	96.98	66.75	30.00	0.23	0.00	3	000	97.10	66.65	30.00	0.45	0.00
4	000	96.61	66.48	30.00	0.13	0.00	4	000	96.98	66.75	30.00	0.23	0.00
5	000	96.50	66.50	30.00	0.00	0.00	5	000	96.61	66.48	30.00	0.13	0.00
6	000	96.45	65.80	30.00	0.50	0.15	6	000	96.50	66.50	30.00	0.00	0.00
7	000	96.43	65.88	30.00	0.35	0.20	7	000	96.45	65.80	30.00	0.50	0.15
8	000	95.53	65.40	30.00	0.13	0.00	8	000	96.43	65.88	30.00	0.35	0.20
9	000	94.96	64.78	30.00	0.18	0.00	9	000	95.53	65.40	30.00	0.13	0.00
10	000	94.85	64.50	30.00	0.35	0.00	10	000	94.96	64.78	30.00	0.18	0.00
11	000	94.58	64.58	30.00	0.00	0.00	11	000	94.85	64.50	30.00	0.35	0.00
12	000	92.71	62.53	30.00	0.18	0.00	12	000	94.58	64.58	30.00	0.00	0.00
13	000	92.51	62.38	30.00	0.13	0.00	13	000	92.71	62.53	30.00	0.18	0.00
14	000	92.23	62.10	30.00	0.13	0.00	14	000	92.51	62.38	30.00	0.13	0.00
15	000	92.13	61.95	30.00	0.18	0.00	15	000	92.23	62.10	30.00	0.13	0.00
16	000	91.60	61.15	30.00	0.45	0.00	16	000	92.13	61.95	30.00	0.18	0.00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 ○○과에서는 ○○○의 징계사항을 2017년 상반기 평정 시 근무성적평정 위원회에 통보한 바는 없으나 ○○○의 비위로 인한 내용<sup>14)</sup>은 직원들은 물론 근무

<sup>14) 2016</sup>년 11월경 행정자치부 특별감사 결과 ① '함안군 ○○○ ○○사업계획'의 용역 입찰 관련 자료 사전 유출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 제공, ② 수탁기관인 ○○○공사 ○○지사에 ○○○(대표 ○○○)

성적평정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당시 공직사회에 미친 물의와 징계의 내용, 종류, 형량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다는 업무 관계자(2017년 상반기 근무 성적평정 실무자 〇〇〇)의 진술(관련 확인서 제출)로 평정등급 "양"이 징계로 인한 사유 외에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관련 진술 확인서를 제출한 근무성적평정 실무자 〇〇〇은 당시 평정 권한을 가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며, 진술내용을 입증하거나 〇〇〇의 평정등급 및 평정점 결정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인 ○○○과의 문답 중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징계처분이 객관적인 감점요인으로 반영이 되었는지"와 "4대 범죄 등사안이 중할 경우 감점을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질의하자 "규정, 지침은 없지만 그 사안이 중할 경우 감점이 안되는 것이 더 이상할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여 2017년 상반기 전·후 함안군 징계처분자에 대한 평정등급 및 평정점 부여내역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사안이 중한 징계처분으로인해 평정등급이 반드시 "양"이 되거나 이전보다 평정점수가 하락하는 등 감점을일관되게 적용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2016~2018년도 징계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내역

연 번	징계의결일	당시 직급	성명	결과	혐의 상세	'15 하	'16 상	'16 하	'17 상	'17 하	'18 상	'18 하	'19 상
1	2016. 4 27.	O급	000	<u>감봉</u> 1월	<u>음주</u>	34.5 (양)	<u>41.4</u> (양)	46.0 (양)	41.0 (양)				
2	2016. 4 27.	OG 0급	000	불문 경고	업무처리 소홀	67.6 (수)	65.2 (수)	63.5 (우)	62.9 (우)				
3	2016. 4 27.	OG 0급	000	불문 경고	업무처리 소홀	41.4 (양)	46.0 (양)	48.3 (양)	54.2 (우)				
4	2016. 8. 26.	OG 0급	000	<u>감봉</u> 3월	<u>공금유용</u>	48.7 (양)	48.0 (양)	47.3 (양)	49.5 (양)	40.8 (양)			

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당하게 지시, ③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수수, ④ 2015년 ○○○○○사업(SW) 준공 및 정산 승인업무 소홀 등으로 2016. 12. 29. "정직 1월"과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받음.

연 번	징계의결일	당시 직급	성명	결과	혐의 상세	'15 하	'16 상	'16 하	′17 상	'17 하	′18 상	'18 하	'19 상
5	2017. 3. 22.	O급	000	<u>정직</u> 1월	<u>음주</u>		57.9 (우)	52.5 (양)	<u>57.1</u> (우)	59.1 (우)			
6	2017. 4. 25.		000	불문 경고	업무처리 소홀	60.5 (우)	67.5 ( <del>个</del> )	67.5 (수)	명예 퇴직				
7	2017. 4. 25.		000	견책	업무처리 소홀			49.0 (양)	48.3 (양)	48.7 (양)	53.5 (우)	55.0 (우)	
8	2017. 6. 30.	이급	000	불문 경고	교통사고 발생	55.0 (우)	45.0 (양)	52.0 (우)	38.0 (양)	명예 퇴직			
9	2018. 6. 25.	O급	000	견책	업무처리 소홀					49.2 (양)	51.4 (양)	57.0 (우)	58.5 (우)
10	2018. 6. 25.	O급	000	견책	업무처리 소홀					56.5 (우)	62.1 (우)	60.3 (우)	50.6 (양)
11	2018. 7. 11.	이급	000	<u>견책</u>	<u>음주</u>						61.6 (우)	<u>59.5</u> (우)	승진
12	2018. 7. 11.	이급	000	불문 경고	업무처리 소홀					63.0 (우)	승진	34.4 (양)	35.8 (양)
13	2018. 7. 11.	이급	000	<u>견책</u>	<u>금품수수</u>					55.0 (우)	59.3 (우)	<u>59.3</u> (우)	63.9 (우)
14	2018. 7. 11.	O급	000	견책	음주					58.5 (우)	58.5 (우)	휴직	휴직
15	2018. 10. 18.	이급	000	<u>감봉</u> 1월	<u>음주</u>					64.0 (수)	67.0 ( <del>个</del> )	<u>67.0</u> ( <u></u> 个)	의원 면직
16	2018. 10. 18.	O급	000	불문 경고	이권개입 등					56.8 (우)	57.4 (우)	57.4 (우)	59.4 (우)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의 2017년 상반기 평정등급 "양"이 징계로 인한 사유 외에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함안군의 당시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 징계의 영향으로 평정등급과 평정점을 이전보다 낮게 받았다<sup>15)</sup>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평정자가 평정대상의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함에 있어 직무수행태도에

<sup>15) 2016</sup>년 상반기 67.6점(수-7위), 2016년 하반기 66.0점(수-11위), 2017년 상반기 48.8점(양-49위), 2017년 하반기 61.8점(우-20위), 2018년 상반기 69.2점(수-3위), 2018년 하반기 68.8점(수-4위)

대한 감점요인일 뿐이며, 근평위의 군 전체서열과 평정등급, 평정점 심사·결정시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징계처분이 객관적인 감점평가 기준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가 징계처분이 취소16)되어 불이익한 근무성적평정의 무효화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정 요구를 내용으로 고충심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함안군 ○○과에서는 해당 사실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해당청구 내용이 고충심사청구 대상이 아님을 답변해야만 했다.

설령 청구인의 인사고충 심사신청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하더라도 함안군 〇〇과에서는 위의 사실과 더불어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하여 확정한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용권자가 소급하여 재조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근거 없는 행위이며,

이미 입력된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정점을 변경하게 되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동일 직렬·직급의 다른 직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승진 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확히 보고하여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함안군 ○○과에서는 임용권자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권한을 침해하여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변경 입력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함과 더불어 그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알려야만 했다.

그런데도, 함안군에서는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내부위원 전원이 근무성적 평정위원으로 동일한 구성원이 요구한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근무성적평정점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조정하였다.

더구나, 관련 판례17)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행정청 내부에

<sup>16) &</sup>quot;정직 1월", "징계부가금 2배" 징계처분(2017. 1. 25. 경상남도인사위원회) ⇒ "감봉 3월"(2017. 5. 18.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 ⇒ 징계처분 취소 확정(2018. 1. 9. 창원지방법원 판결) ⇒ 훈계(2018. 2. 2.)

<sup>17)</sup> 서울고등법원 93구○○○○(근무성적조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무효 확인)

보관하면서 인사관리의 자료로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자료로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평정결과에 기초하여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사에 관한 처분 등이 있기 전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자체만으로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승진임용 또한 예상결원 수 등을 포함한 총 결원의 2배수 내지 7배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결원 및 예상결원 수, 결정되는 배수의 정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수가 변동되는 것이어서 승진시험에 임하여 대상자의 수를 정하는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상자의 승진임용 해당여부가 불확정, 유동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이승진후보자명부에 낮은 순위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하락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이 건의 실무책임자인 〇〇〇이 경위서와 문답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〇〇〇의 인사상 불이익, 피해를 구제·회복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실무책임자 ○○○이 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의 재조정이 아니라 향후 인사운영과정에서 인사고충을 반영하여 줄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음에도 인사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점, 실무담당자 ○○○은 인사위원회 권고 사항에 따라 실무책임자 ○○○이 작성한 검토보고에 협조한 후 그에 근거하여 단순히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평정점만 변경 입력하였음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승진후보자 명부 무효 확인 등 소송)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함과 더불어 그 사유를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만 마땅함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 제2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2017년 상반기 평정점을 소급하여 변경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조정함으로써 지방○○○○ 13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뿐만 아니라 고충심사 청구 당사자 ○○○의 승진임용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친 ○○과 실무책임자지방○○사무관 ○○○(현, ○○○○○)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처분하고, (경징계)

2018년 당시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로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상의 2017년 근무성적평정점을 부당하게 소급하여 변경 입력한 OO과 실무담당자 지방OOOOOO(현, OOOO)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고충심사를 통해 특정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부당하게 소급 변경하고 승진임용 처리한 ○○과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징계·주의 요구

제 목 면접시험 채점조서 오기로 합격자 변경 채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2019. 3. 12. ○○○ 근무를 위한 ○○○○○ ○급 1명 등의 '○○○○○○○○○○ 일반임기제공무원 충원계획(안)'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친 후, 2019. 3. 13.부터 10일간 채용 공고하여 3명의 응시자로부터 지원서류를 제출받고 2명<sup>18)</sup>에 대해 면접시험을 거쳐 2019. 4. 8. ○○○을 최종합격자로결정한 다음 2019. 5. 15. 일반임기제 ○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제50조의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방법),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sup>18)</sup> 서류전형 응시자 3명 중 1명 면접시험 결시

면접시험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5개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을 검정하고,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시험 공고를 하고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2019. 3. 13. 2019년 제2회 함안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1차 시험은 서류전형이며,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등적격성을 검정하는 면접시험으로 선발방법을 공고하였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할 수 없다.

따라서 함안군 ○○과에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각 면접 위원이 평정표에 기재한 평정요소별 평정결과를 확인하고 응시자별 채점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대사한 후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야만 했다.

#### 3.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함안군 ○○과에서는 ○○○ 근무를 위한 ○○○○ ○급에 대한 서류 전형 합격자 3명 중 면접시험에 응시한 ○○○과 ○○○에 대하여 2019. 4. 4. 면접시험을 시행한 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의 면접위원(○○○)의 평정항목별점수¹9)를 [표1]과 같이 채점조서에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총득점 66점으로 1순위가되어야 할 ○○○이 채점조서에 62점으로 기재되어 2순위가 되고, 총득점 60점으로 2순위가 되어야 할 ○○○이 64점으로 기재되어 1순위가 됨으로써 최종합격자가○○○이 아닌 ○○○으로 부당하게 결정되었다.

그 결과 정당하게 합격하여야 할 ○○○이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탈락함으로써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임용될 기회가 상실되었다.

[표1]면접시험 채점조서

					항도	ӊ별 평점				순	위			
응시 번호	성명	면? 위:	면접 위원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 표현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총득점	기 재	정 당			
		00	0	2	3	3	3	2	13	13				
		00	0	3	2	3	3	2	13					
		00		2	2	3	2	2	11					
	2019 -02 -임기2 -01	000	기재 점수	3	3	3	3	3	15					
-임기2		000	고 · 정당 점수	2	2	2	3	2	11	1	2			
-01		합계	0	3	2	2	3	2	12					
			기재 점수	13	12	14	14	11	64/75					
			기재 점수 정당 점수	12	11	13	14	10	60/75					
		00	000		3	3	3	3	14					
		00	0	3	3	2	3	3	14					
		00	0	2	3	3	3	2	13					
2019 -02			기재 점수	2	2	2	3	2	11					
-임기2	2 000		000	기재 점수 정당 점수	3	3	3	3	3	15	2	1		
02	-02	00	0	2	1	2	3	2	10					
						기재 점수	11	12	12	15	12	62/75		
			합계	기재 점수 정당 점수	12	13	13	15	13	6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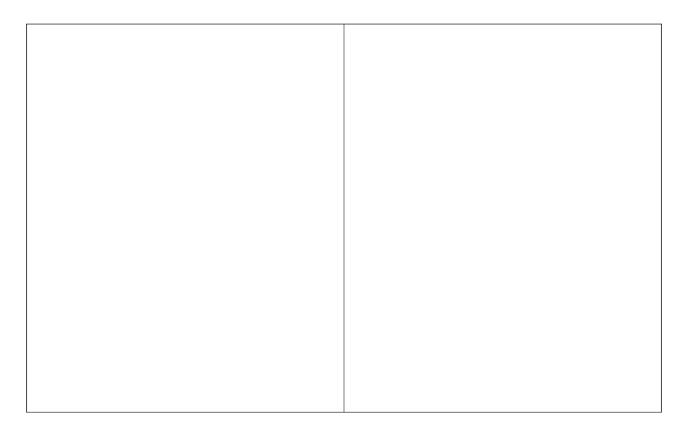
<sup>19)</sup> 상·중·하를 각각 3점, 2점, 1점으로 적용하여 5개 평정요소에 부여(면접위원 당 각 15점, 총 75점 만점)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 ○○과에서는 관련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의 의도 없이 면접위원들의 채점지 순서가 섞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채점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담당자가 아래 그림과 같이 평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응시자의 성명과 평정점, 면접위원의 성명을 확인하고 채점표에 응시자별 점수를 기재하는 단순한 처리사항임에도 평정점을 바꾸어 기재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실로 판단되며,

실무책임자가 당시 평정점수를 두세 번 확인하고 채점조서와 평정표를 직접 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 채점조서의 오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내용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변경 기재한 면접시험 평정표



더구나, 이로 인해 최종 합격자가 변경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실무 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 다만, 실무담당자가 당시 2년 2개월의 짧은 공무원 경력<sup>20)</sup>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맡게 된 점과 채용 당사자 또는 다른 이의 청탁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의 사유가 아니라 단순 실수로 인해 채점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일부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면접위원의 평정항목별 점수를 정확히 대사하고 채점조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최종 합격자가 부당하게 변경 결정된 결과를 초래한 〇〇과 실무담당자 지방〇〇〇〇 〇〇〇의 실무책임자 지방〇〇〇〇 〇〇〇(현, 〇〇〇〇〇)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징계)

② 그리고 정당하게 합격되어야 함에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임용기회를** 상실한 OOO에게 감사 지적사항과 더불어 구제방안을 통보하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행정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sup>20)</sup> 최초 임용일 : 2017. 3. 1.

# 【일련번호: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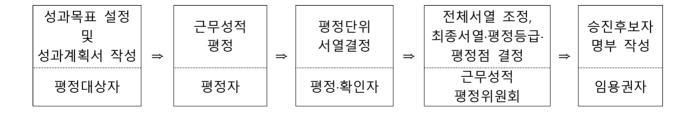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함안군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지침"을 포함한 정기 근무성적평정 실시 공문을 전 실과, 직속기관 등에 통보하여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 [그림1]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절차



출처)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실무」

#### 2.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변경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설치)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에 따르면,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분포비율<sup>21)</sup>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함안군 〇〇과에서는 2017년 하반기 〇〇면에서 제출한 〇〇〇급 서열 명부에는 〇〇〇(1위), 〇〇〇(2위)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최종서열에서는 〇〇〇(18위), 〇〇〇(21위) 순으로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는 등 [표1]과 같이 2017년 하반기 4명, 2018년 상반기 13명, 2018년 하반기 2명, 2020년 상반기 2명의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표1]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 변경 내역

78	직렬	평정	성명	평정단위	근무성적	명정 결과				
구분	직급	단위	66	서열	최종서열	평정점				
	000급	○○면	000	1	21	57.2				
2017년	0001	001	000	2	18	59.0				
하반기	000급	000 <del>1</del>	000 <del>1</del>	000 <del>1</del>	000 <del>1</del>	○○면	000	3	16	51.9
		006	000	4	5	64.0				
	000급	○○면	000	1	22	42.0				
2018년	0006	006	000	2	21	43.9				
상반기		00	000	2	24	53.2				
	000급	00과	000	3	23	53.9				

<sup>21)</sup>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0% /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0% /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0% / 가(32점 미만) 10%

			000	1	27	49.0
		00 00과	000	2	21	55.3
			000	3	26	50.4
			000	1	7	61.6
		00	000	2	4	65.5
	0007	○○과	000	3	12	55.6
	000급		000	4	6	62.8
		0000	000	3	16	48.8
		000	000	4	10	58.0
2018년	0003	0074	000	4	65	38.9
하반기	000급	○○과	000	5	57	44.5
2020년	000급	00	000	6	10	61.2
상반기	0001	00국	000	7	8	63

## 3.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 등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

그런데 함안군 ○○과에서는 ○○○급 ○○○이 2013. 11. 15.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같은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시설(지적)직렬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5. 3. 16. 임용되었으므로 그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매회 0.5점의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표2]와 같이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자격증 소지를 조건으로 신규 임용된 지적, 사회복지, 간호, 의료기술, 수의, 식품위생, 사서 직렬 33명에게 1회에서 많게는 5회까지 매회 0.5점의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사실이 있다.

[표2] 특수직급 신규임용시험 임용자의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 내역

직렬	직급	성명	자격증명	부여가점	부여기간	비고
		000	지적산업기사	0.50	2017 하	
지적	○급	000	지적산업기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1순위 상승 (9위→8위)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 하 - ○급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 하 - ○급
		000	사회복지사1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 ○급
사회복지	○급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 하 - ○급
\\ \\ \\ \\	ОВ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 하 - ○급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2018 하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급	000	사회복지사1급	0.50	2018 상	
		000	사회복지사2급	0.50	2018 상	
		000	간호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000	간호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000	간호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간호	○급	000	간호사	0.50	2018 상, 2018 하	
		000	간호사	0.50	2018 상, 2018 하	
		000	간호사	0.50	2018 상, 2018 하	
		000	간호사	0.50	2018 상, 2018 하	
		000	임상병리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의료기술	○급	000	물리치료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의표기출   		000	치과위생사	0.50	2019 하	
	○급	000	물리치료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8 상 - ○급
		000	방사선사	0.50	2018 상, 2018 하	
수의	○급	000	수의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2019 상 2019 하	2019 상 - ○급
	○급	000	수의사	0.50	2018 상, 2018 하	
식품위생	○급	000	위생사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사서	○급	000	준사서	0.50	2017 하, 2018 상 2018 하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업무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를 변경하고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하였으며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 강화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9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평정단위별서열 명부 순위를 변경하고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해 온 OO과실무담당자 지방OOOO OOO(현, OOO)와 지방OOOO OOO(현, OOO), 지방OOOO보 OOO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②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최종서열이 부당하게 변경된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평정점을당초 평정단위별 서열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부적정하게 부여된 자격증 가산점또한 수정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사후 확인을 받는 등 부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이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으로 [표1]과 같이 채용하였다.

[표1] 경력경쟁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현황

임용일자	임용직급	성명	채용분야	비고
2017. 7. 26.	지방○○○○	○○○ (재임용)	-	- (2급 정○○○ 자격증 보유)
2017. 9. 17.	지방○○○○	○○○ (재임용)	-	- (○○○○○ 6년 9월 근무)
2018. 4. 30.	지방○○○○	000	-	-
2019. 3. 15.	지방○○○	000	-	-
2019. 5. 15.	지방○○○○	○○○ (재임용)	-	- (지방○○○○ / 2급 정○○○ 자격증 보유)
2019. 5. 15.	지방○○○	000	-	-
2019. 8. 12.	지방○○○○○	000	-	-
2019. 8. 12.	지방○○○	000	-	-
2019. 11. 4.	지방○○○	000	-	-
2019. 12. 9.	지방○○○○	000	-	-
2019. 12. 9.	지방○○○○	000	-	-
2020. 2. 3.	지방○○○○	000	-	-
2020. 2. 3.	지방○○○	000	-	-

##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항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만 해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제1항 각 호(1호~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수 있다.

그리고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 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안군에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4조 및 별표 5, 별표 5의2로 자격증 지정기준 및 자격증 구분표를 별도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에 따라「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2]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호22)에 따른 임용 응시요건

계급	임 용 자 격
5급	1. 학○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1. 학○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1. 학○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sup>22)</sup>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9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 3~4급 임용 응시요건 생략 기재

# [표3]「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9호23)에 따른 임용 응시요건

계급	임 용 자 격
5급	1. 관련분야 박○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석○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ol> <li>관련분야 석○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관련분야 학○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7급	1. 관련분야 학○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4급 임용 응시요건 생략 기재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인사실무」를 살펴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경력경쟁임용요건·자격"이외에 추가적인 자격제한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안군 〇〇과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sup>23)</s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 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가. 응시요건의 동시 적용 또는 부당한 중복 제한

그런데도 함안군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시「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의 제1호에서 제9호 중 하나의 응시요건을 정하여임용자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표4]와 같이 2017년 7월 ○○○ 분야 ○○○ ○○ ○급에 대한 응시요건으로 제2호, 제3호, 제9호를, 2018년 3월 ○○○ ○○○급의 응시요건으로 제3호와 제9호를 동시에 모두 적용하여, 하나 이상의 요건의 갖춘 자가 응시하도록 자격요건을 공고하였다.

또한, ○○○ 채용을 위해 2019년 3월 ○○○급, ○○○급에 대한 자격요건으로 각각 정○○○와 준○○○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요건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6월 ○○○○ ○○○○급과 ○○○○ ○○○급 자격요건으로 실무경력과 동시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필수자격요건으로 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중복 제한하여 공고하였다.

#### 나. 법령·지침에 근거 없는 자격요건 제한

함안군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채용 공고 시 [표4]와 같이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5의2의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 구분표에 포함되지 않은 "정○○○",

### 다. 채용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자격요건 제한

함안군 ○○과에서는 "3급 정○○○"의 경우 「○○○ 및 ○○○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자격요건이 '박○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석○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준○○○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 재직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임용 자격요건'에 따르면 5급 이상의 요건에 해당됨에도 ○○○급에 대한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다.

또한, ○○○급 자격요건으로 "준○○○"를, ○○○급 자격요건으로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채용대상 직급보다 상위직급의 자격요건으로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하여 채용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정당한 응시대상자의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최소한의 응시자만 응시하게 하여 기존 근무자(○○○, ○○○)가 재임용되도록 하는 등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표4] 자격요건 부적정 제한 내역

구분	직 급 (업무)	임용근거 (법조항)	자격요건	서류/면접 응시자수	비고
계	13명			22명/17명	
'17년 7월	지방()() ()()()()()()()()()()()()()()()()()	제27조 제2항	<ul><li>○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li><li>1. 관련분야 학○학위를 취득한 사람</li></ul>	2명/2명 (재임용)	*제2호, 제3호,

	(000)	제2호, 제3호, 제9호	2. 학○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급 또는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 정○○○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분야 및 ○○○○○ ○○조사 유경험자 우대		제9호 동시적용 *정○○ 자격증 근거 부적정 →「○○○ 및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b>급 채용</b> <b>자격요건</b>
'17년 8월	지방OO OOO (OO OOO)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ul> <li>○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li> <li>- ○○○○○○○○○○○○○○○○○○○○○○○○○○○○○○○○○○○○</li></ul>	2명/2명 (재임용)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급 이상 채용자격 (5년 이상 실무경력) 요건
·18년 3월	지방()()()()()()()()()()()()()()()()()()()	제27조 제2항 제3호, 제9호	<ul> <li>○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li> <li>1. 학○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급 또는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li> <li>※ 실무경력 분야: 국·공립 ○○○, 대학(교) ○○○, 사립○○○(○○○○○○○○○○○○○○○○○○○○○○○○○○○○○○○○○</li></ul>	3명/2명	*제3호, 제9호 동시적용

'19년 2월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3. ○○조사서 집필 증빙자료 제출자(3건 이상) 4. ○○○○○○ 정○○○ 자격증 소지자(3급 이상) 5. ○○○○분야 및 ○○○○○ ○○조사 유경험자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 ○○, ○○○, ○○○, ○○○, ○○○○  자격 보유자로서 ○○○○분야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실무경력 분야 : 지방자치단체, ○○○○○에 근무한 경력 ※ ○○○○○ ○○시행규정 제102조 및 제122조 제2항의 ○○지역 출입 제한자는 응시 불가	2명/2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19년 3월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 및 ○○○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별표1에 따른 정○○○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학○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급 또는 ○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위(학과): ○○학, ○○학, ○학, ○○학, ○○○학, ○○○학, ○○학, ○○	1명/1명 (재공고) (재임용)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정○○ 자격증 →○ <b>급 채용</b> <b>자격요건</b>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 및 ○○○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별표1에 따른 준○○○ 이상 자격증 소지자 로서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범위 : ○○ 연구분야 - 국·공립 ○○○, 대학(교)○○○, 사립○○○ (○○○ 및 ○○○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	3명/2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준○○○ 자격증 →○ <b>급 채용</b> <b>자격요건</b>

			○○에 한함), ○○○발굴기관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9호	<ul> <li>○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li> <li>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필수자격요건         <ul> <li>「공연법」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 3급 이상 소지자</li> </ul> </li> <li>※ 임용예정 관련 전공 : 방송음향제작,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등 관련 유○학과</li> </ul>	3명/3명	*제2호, 제3호, 제9호 중복제한
'19년 6월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9호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분야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공연법」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 3급 이상 소지자 ※ 임용예정 관련 전공: 방송기계 조작,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관련 유○학과 ※ 임용예정 관련 경력: 무대 기계조작 분야	2명/2명	*제2호, 제3호, 제9호 중복제한
	지방()() ()()()()()()()()()()()()()()()()()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 ○○○, ○○○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0명/0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 ○ ○○○지경즈 스키티		
			• ○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운영 ○○○ 휴양조련시설 근무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3급 이상 자격증소기자 ※ 우대조건 • 국내·외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재활○○○○○ 또는 ○○○○ 자격증소기자 • 국제 ○○○○○ 자격증소기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 지방자치단체, ○○○	2명/0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 공공기관 운영 ○○○ 휴양조련시설 근무		
'19년 8월	지방()() ()()()()()()()()()()()()()()()()()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 ○○○, ○○○,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우대조건 •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 : ○○○○○, 지방자 치단체・공공기관 운영 ○○○ 휴양조련시설 근무	0명/0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2명/1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ul> <li>국내·외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li> <li>재활○○○○ 또는 ○○○○자격증 소지자</li> <li>국제 ○○○○○ 자격증 소지자</li> <li>※ 임용예정 관련 경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신고된 ○○○ 근무</li> </ul>		
'19년 11월	지방()()()()()()()()()()()()()()()()()()()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호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2급 이상 자격증소기자 ※ 우대조건 • 국내·외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자 • ○○○○○○○○ 또는 ○○○○자격증소기자 • 국제 ○○○○○ 자격증소기자 ※ 임용예정 관련 경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신고된 ○○○ 근무	0명/0명	*제2호, 제3호, 중복제한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한 업무연찬 미흡으로 발생한 일이며, 담당자의 업무 연찬 및 인수인계를 강화하여 유사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임용자격 기준, 「함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개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기준을 준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으로 다수의 정당한 응시대상자들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

○○○(현, ○○○), 지방○○○○(현, ○○○○) ○○○, 지방○○○○보 ○○○ (현, ○○○○),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그리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미이행 등 업무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〇〇〇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축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2018. 12. 31. 개정(시행: 2020. 1. 1.)된「축산법」제2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하게 할 수 있고.

개정전「축산법」제28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〇〇과에서도 〇〇과-〇〇〇〇호(2017.〇〇〇)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일제점검 계획 알림」및 〇〇과-〇〇〇호(2019.〇〇〇) 「2019년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 추진계획 알림」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기준 적합 여부, 축산업 허가·등록자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축산업 허가자 등의 보수교육 이수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함안군 ○○○과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2년에 1회 또는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안군 〇〇〇과는 2017년 일제점검에서 전체 점검대상 농가(〇〇〇호) 중 〇〇개 농가만 직접 방문하여 허가·등록 여부, 시설·장비, 적정사육두수, 준수사항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점검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대상농가(〇〇〇호)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적합농가인 것처럼 도 〇〇과에 보고하였다.

2019년에는 자체점검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읍·면 협조 공문 발송, 현장점 검표 작성 등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 대상농가(○○○호) 중 ○개 농가에 대해서는 부적합(시정명령), 나머지 ○○○개 농가에 대해서는 적합농가인 것처럼 도 ○○과에 보고하였다.

### 3. 축산업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과태료 부과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2018. 12. 31. 개정(시행:2020. 1. 1.)된 「축산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전「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2019. 12. 31. 개정, 2020. 1. 1. 시행)에 따라 과태료(허가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400만원 / 등록대상: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시행령 제27조 [별표4]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안군 ○○○과에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중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과에서는 【표1】과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 ○○○ 등 ○○개 농가에 대해 과태료(총 ○○○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 【표1】축산업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장명칭	권리주체	구분	최종 경과 교육일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1	0000	000	허가대상	2017-04-07		

연번	사업장명칭	권리주체	구분	최종 경과 교육일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2	0000	000	허가대상	2016-09-28		
3	0000	000	허가대상	2017-06-27		
4	0000	000	허가대상	2017-04-06		
5	0000	000	허가대상	-		
6	0000	000	허가대상	2017-04-17		
7	0000	000	허가대상	2017-04-07		
8	0000	000	허가대상	2014-02-19		
9	0000	000	허가대상	2017-09-13		
10	0000	000	허가대상	2017-04-07		
11	0000	000	허가대상	-		
12	0000	000	허가대상	2017-04-06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휴업·폐업 등 미신고 농가 과태료 부과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축산법」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허가대상: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 등록대상: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휴업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별표2] 축산업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기지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 ○○○과에서는 정기적으로 농가의 가축의 사육 여부를 파악하여 사실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으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휴업 등을 한 자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안군에서는 감사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표2】의 ○○○○ 등 ○개 농가에 대해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과태료(총 ○○만원) 부과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 [표2] 미사육 농가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업장명칭	주사육업종	권리주체	구분	과태료 미부과 금액	비고
	합계					
1	0000	00	000	허가대상		휴업 미신고
2	0000	00	000	허가대상		휴업 미신고
3	00000 00	00	000	등록대상		폐업 미신고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과에서는 당면한 축산 관련 질병 및 방역관리 업무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 법령에서 정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업보수교육 미이수 및 휴·폐업 미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축산법」제28조,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일제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및 휴업·폐업 등 미신고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〇〇〇과 지방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과(현 〇〇〇〇과) 지방〇〇〇〇 〇〇〇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와 휴업·폐업 등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도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2.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옥외광고물법」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장소 및 물건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한편,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광고물의 관리자등에게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하거나, 같은법 제10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 ○○○○라는 옥외광고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시 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30일 전에 해당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안내하고,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일 현재 함안군 옥외광고몰 등록대장을 점검한 결과 총 QOOO건의 등록된 옥외광고물 중 표시기간 종료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이 OOO건(전체 옥외광고물의 OO%)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의에서는 이들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제10조, 제10조의3에 따른 자진정비를 위한 계고,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OOO건이 모두 불법광고물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구나 표시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연장허가 대상인 옥외광고물 중 OOO건에 대하여는 함안군 조례 제3조에 따라 연장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광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조차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1】함안군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2020. 6. 8. 현재, 단위 : 건)

78	연장허가 안내문			OI TL		미연장		행정
구분	계	발송	미발송	연장	계	계고	미계고	대집행
계						-		-
2017 이전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과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옥외광고물법」제3조, 제17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함안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안군 ○○○○과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경우 광고물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일관성 있게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동안 함안군에서 부과·징수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2】의 과소부과 ○○건(○○,○○○원)과 【표3】의 과다부과 ○○○건 (○○○,○○○원) 등 ○○○건의 수수료를 잘못 산정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표2]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소부과 현황

(단위: m², 원)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소 부과액 (A)-(B)	비고
		합계						
1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1*1				
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5*1.2				
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1.3*0.8				
4		지주이용간판	000000	2.9*2.27				
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14.7*2.3				
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2.2*1.2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소 부과액 (A)-(B)	비고
7		지주이용간판	00 000	1.1*6				
8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15*1.2				
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0*2.9				
10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주) 00000	20*1				
11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3.6*1				
1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5.4*1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표3】옥외광고물 수수료 과다부과 현황

(단위: m², 원)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다 부 <b>과액</b> (A)-(B)	비고
		합계						
1		돌출간판	( <del>7)</del> 0000000 0000	0.75*5.2				
2		돌출간판	00000	0.8*4				
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3*2.5				
4		지주이용간판	000000	6*0.99				
5		지주이용간판	00000주)	2.6*2.8				
6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28*0.9				
8		지주이용간판	00000	2.3*2.2				
9		지주이용간판	0000(予00 000000	22*2.6				
10		지주이용간판	0000	2.7*2.07				
11		벽면이용간판 (세로형)	0000 0000	1.2*11.5				
1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64.5*1				
1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66*1.3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다 부 <b>과액</b> (A)-(B)	비고
14		지주이용간판	00000( <del>7)</del> 00 (0000)000	2.6*2.8				
1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4*0.9				
16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17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높이:9.8				
18		지주이용간판	000000주)	2.6*2.2 높이:9.8				
19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높이:9.8				
20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높이:9.8				
21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높이:9.8				
22		지주이용간판	0000(주) 00000	2.07*2.7 높이:8				
2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000000	10.2*1.5				
24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000000	10.53*1.2				
25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00	2.6*2.8				
26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27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28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32.8*1				
2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25.5*1				
30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31		지주이용간판	(주)0000 00000	2.07*2.7				
3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주)0000 00000	18*0.75				
33		지주이용간판	(A)0000 0000	1.1*8				
34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12*0.6				
35		돌출간판	00000 000	0.8*4				
3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0.4*1.6				
3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1.4*1.6				
38		돌출간판	0000	0.8*6				
3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16*0.8				
40		돌출간판	000 000	0.8*4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다 부 <b>과액</b> (A)-(B)	비고
41		돌출간판	0000000	0.7*4				
42		돌출간판	0000 0000(至)	0.8*4				
43		돌출간판	0000	0.8*3.9				
44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9*0.9				
4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32*0.9				
4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6.9*1				
4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6*1.1				
48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8.4*1.2				
4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0	4.7*1.45				
50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5*1.1				
51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	7*1.6				
52		지주이용간판	00000	3*2.4				
5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0.5*1.2				
54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	12.5*0.85				
5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9.2*1				
5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000	14.9*1.52				
5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7.3*1.5				
58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2*1.2				
5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0*2.9				
60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1.18*1.7 3				
61		돌출간판	00000	0.8*2.4				
6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6*1.7				
63		지주이용간판	( <del>7)</del> 000 000	1.2*8				
64		돌출간판	0000	0.5*4				
6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10.5*1.2				
6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 0000	6*1.2				
6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 000(주)	7.71*1.2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다 부 <b>과액</b> (A)-(B)	비고
68		옥상간판	0000 000(주)	9.64*1.5				
6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0	40.83*1				
70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0	2.6*2.8				
71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0	2.6*2.8				
7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16*0.5				
7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19*0.6				
74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75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7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19*0.6				
7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주) 00000	22*0.7				
78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7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56*1.2				
80		지주이용간판	00000	2.6*2.2 높이:9.8				
81		지주이용간판	00000	2.6*2.2 높이:9.8				
8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31*0.9				
83		지주이용간판	00000	2.6*2.2				
84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2 높이:9.8				
85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32*0.8				
8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4*0.8				
8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8*0.9				
88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6*0.8				
8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8*0.9				
90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91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92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43*0.9				
9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4*0.8				
94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28*0.9				

연번	허가신고일	광고물종류	업소명	광고물 규격	법정 수수료 (A)	납입 수수료 (B)	과다 부과액 (A)-(B)	비고
95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높이:8				
96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6*0.9				
97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	14*0.8				
98		지주이용간판	00000(주) 00000	2.6*2.8				
99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8*0.9				
100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6*0.9				
101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00	14*0.9				
102		돌출간판	00000	0.9*2.5				
103		벽면이용간판 (가로형)	0000(취00 0000000	28*3.2				
104		지주이용간판	0000(予00 000000	4.5*2.28				
105		지주이용간판	000000	1.1*8				
106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높이:8				
107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높이:8				
108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높이:8				
109		지주이용간판	00000	2.07*2.7 높이:8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과다한 당면업무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연장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표시기간 연장처리, 행정대집행시행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수료를 잘못 산정하여 과오납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 후 환급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옥외광고물법」및「함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표시기간 미연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허가·신고 수수료를 잘못 부과한 실무담당자 ○○○아 지방○○○○ ○○아, ○○○아(현 ○○○) 지방○○○○ ○○아, ○○○아(현 ○○○) 지방○○○○ ○○아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표시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OOO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정비를 위한 계고, 행정대집행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과다부 과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반환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처리에 철 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ㅇ)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에 대하여 [표]와 같이 전· 월세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표]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계약명	임차대상 물건		계약일	계약기간	임차	미
7110	소재지	소유자	계하고	게극기간	보증금	11 <u>11</u>
국공립 ○○○ ○○○○○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	<b>함안군 ○○○</b>	000 (000 00000 대표)	0000. 3. 29.	0000 3 29.~ 0000. 2. 28.	100,000	324,000천 원 근저당권 기설정 ( <b>조당</b> )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되어 있으며,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따르면 소관과장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와 제117조, 제1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건물을 임차하는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하고자 하는 건물의 근저당권과 압류 등 전·월세 보증금 반환의 저해요소를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지급 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체결 등을 통하여 임차보증금 회수장치를 마련한 후에 군수 명의로 건물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채권을 입증할 서류 등을 보존하고 있어야만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에서는 ○○○ ○○○○○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자로 선정되고 0000. 3. 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위탁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탁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고, 어린이집 시설 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1억 원 이내에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며, 위탁자의판단 하에 신청 시설과 협의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서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5항에서는 "수탁자는 이 계약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건물 등'은 양도할 수 없고,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계약 및 위·수탁 계약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위 부동산에 대해설정된 가압류, 보전처분 및 압류 등 강제집행처분 등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 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상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 ○○○○○○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3차례(0000. 4. 21. 0000. 7. 11. 0000. 4. 22.)에 걸쳐 근저당권자 ○○○○에 채권최고액 324백만 원이 근저당권설정 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0000. 5. 31. 임차 보증금(100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조치로 보기 어려운 후순위(4순위)로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억원) 등기 한 후 현재까지 채권 보전을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업무연찬 부족으로 채권 보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채권 보전을 위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현재 후 순위인 함안군의 근저당권설정을 선순위로 바꾸도록 안내하였고, 현재 선순위 은행과 협의하여 함안군이 선순위로 변경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대한 건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건에 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로 인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지원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권 보전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추진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부적정한 채권 보전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는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하여 감사 이후 근저당권 설정 순위 변경을 위해 조치 중인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채권 보전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OOOO(현 OOOOO) OOOO OOO, 실무책임자 OOOO OOOO OOO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채권 보전 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OOOO(현 OOOO) OOOO OOO, 실무 책임자 OOOO OOOO OOO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업무를 철저히 하고, 향후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ㅇㅇㅇㅇㅇ 장비운송차량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에서는 지방 및 국가하천 관리를 위하여 ○○○○○을 운영하면서 작업장비 운반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차량을 임차 또는 리스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1】장비운반차량 임차현황

(단위 :천원)

연도	차종(연식)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집행(계약)금액	비고
2012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7,735	10개월
2013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4,912	10개월
2014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7,986	10개월
2015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3,075	10개월
2016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5,224	10개월
2017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7,429	10개월
2018	포터Ⅱ(2007)	○○○ (○○○○○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5,950	10개월
2019	포터Ⅱ(2007)	〇〇〇 (〇〇〇〇〇 기간제근로자)	수의계약 (임차, 단가계약)	14,987	10개월
2020	포터Ⅱ(2020)	00000(주)	수의계약 (리스, 연간계약)	9,120	12개월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수의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6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1장 제1절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 시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계약에 대하여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수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 원 이하의 일반용역(임차)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객관성 있는 가격비교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안군 ○○○○에서는 2012년부터 ○○○○○ 장비운송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에 대한 객관성 있는 가격비교 없이 [표 1]과 같이 ○○○○○ 기간제 근로자 (○○○)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였다. 가격비교에서 위 기간제 근로자(OOO)는 인건비를 제외한 견적가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견적가를 제출함으로써 제출된 가격만으로 최저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제외한 견적가를 비교해야 함) 제출된 가격만 비교하여 위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가를 제시한 것으로 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량 임차는 자동차 임대업 또는 리스업 사업자 등과 계약을 하여야 하나, 차량임차와는 무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sup>24)</sup>로 한정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 위와 같이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차량임차가 '12년부터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차량구매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매년 부당하게 차량을 임차·운행함으로써 [표 2]와 같이 최소 33,459천원에서 최대 74.067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표】예산낭비 추정액

(단위 : 천원)

구분	임차	리스	리스 *		H * *	비고
연도	집행액	집행예상액	예산낭비액	집행예상액	예산낭비액	
2013	14,912	10,871	4,040	5,070	9,841	
2014	17,986	10,871	7,114	5,070	12,915	
2015	13,075	10,871	2,203	5,070	8,004	
2016	15,224	10,871	4,352	5,070	10,153	
2017	17,429	10,871	6,557	5,070	12,358	
2018	15,950	10,871	5,078	5,070	10,879	
2019	17,429	10,871	4,115	5,070	9,917	
합계	112,005	76,097	33,459	35,490	74,067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 산출근거

- 1. 리스 \* = 2020년 해당 차량 리스 계약금액(9,120천원) + 예상유류비(1,751천원)
- 2. 구매 \* \* = 동급차량 구매액(18,330천원)/7년 + 보험료(400천원) + 차량수리비(300천원) + 유류비(1,751천원)

<sup>24)</su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다른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

### 3.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위반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제12조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3조, 제27조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서류(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 배차신청서, 차량 유류 수불 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배차신청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서류 등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함안군 ○○○○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장비운 반 차량을 임차·리스하면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여 사용하였고,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 ㅇㅇㅇㅇ에서는 2011년 최초 ㅇㅇㅇㅇㅇ 장비운송 차량을 임차하면서

차량의 주요 운송 물품이 예초기, 기계톱 등의 기계류 및 유류 등 화물이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용달) 사업자로 한정하여 임차계약 하였고,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하천부지를 지속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작업환경의 특성상 차량 유지 보수비(타이어, 정비비 등)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유로 2012년도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내 다른화물운송 사업자들이 단가를 인상하지 않고는 차량 임차계약 체결을 기피하여, 당시 ○○○○ 근로자 중 화물운송 사업자격을 갖고 있던 ○○○과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는 달리 ○○○○ 기간제근로자 ○○○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써 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 임차견적가를 제출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 장비운송 관용차량 구매를 검토하였으나 하천관리 업무의특성상 ○○○○○ 장비운송 차량은 일반도로가 아닌 하천제방 및 농로(수로)등 거칠고 험한 길을 운행해야 하므로 항상 인명사고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의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기존의 ○○○○○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차량 운전을기피하고, 차량운행을 전담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소요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 장비 운송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대상을 자동차 임대업 또는 리스업 사업자가 아닌 운전에 대한 용역비(인건비)를 포함한 화물운송사업자로 한정할 법적근거 및 사유가 없고, 자동차 임대업 또는 리스업 사업자와 비교하여 화물운송사업자와 계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예산(최근 3년 예산낭비액 최소 15,750천원)이 소요되었고, 현재 별도의 추가 채용없이 기존 ○○○○○ 기간제근로자가 장비 운송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예산 절감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함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 장비 운송차량을 운용하면서「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하여 공용차량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운용한 실무담당자 ㅇㅇㅇㅇ(현 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현 ㅇㅇㅇㅇㅇ) ㅇㅇㅇ, 실무책임자 ㅇㅇㅇㅇ(현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현 ㅇㅇㅇ) ㅇ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ㅇ(현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현 ㅇㅇㅇ) ㅇㅇㅇ ㅇ ㅇㅇ, ㅇㅇㅇㅇ(현 ㅇㅇㅇ) ㅇㅇㅇ ㅇ 다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②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ㅇ)

조 치 기 관 함안군(ㅇㅇㅇ)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 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6조의5(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1항 제1호에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제1항제1의2호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제3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에 따라, 위반 차수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

한편,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안군 ○○○○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의 처리계획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2017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단 두 차례(0000. 3. 13, 0000. 3. 16.)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표 1>과 같이 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 20개소에 대해 신고안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표 2>와 같이 처리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4개소에 대해서도 보고서 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업체들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37,000천 원 [처리계획 미신고(10,000천 원), 처리실적 보고서 미제출(27,000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미제출 현황

연번	업종명	영업허가 (신고)일	업소명	미신고 기간	미부과 과태료
계	20개소				10,000천원
1	일반음식점	2017.06.27	-	2018.01.30. ~ 현재	500천 원
2	휴게음식점	2014.02.18	-	2018.03.28. ~ 현재	500천 원
3	일반음식점	1995.07.25	-	2018.04.06. ~ 현재	500천 원
4	일반음식점	2018.04.13	-	2018.04.13. ~ 현재	500천 원
5	일반음식점	2018.04.17	-	2018.04.17. ~ 현재	500천 원
6	일반음식점	2018.08.23	-	2018.08.23. ~ 현재	500천 원
7	일반음식점	2018.08.31	-	2018.08.31. ~ 현재	500천 원
8	일반음식점	2018.09.21	-	2018.09.21. ~ 현재	500천 원
9	일반음식점	2019.03.07	-	2019.03.07. ~ 현재	500천 원
10	일반음식점	2014.12.15	-	2019.03.26. ~ 현재	500천 원
11	휴게음식점	2019.04.30	-	2019.04.30. ~ 현재	500천 원
12	일반음식점	2018.12.27	-	2019.05.07. ~ 현재	500천 원
13	일반음식점	2019.07.09	-	2019.07.09. ~ 현재	500천 원
14	일반음식점	2012.12.27	-	2019.09.18. ~ 현재	500천 원
15	일반음식점	2019.04.22	-	2019.11.21. ~ 현재	500천 원
16	일반음식점	2019.11.29	-	2019.11.29. ~ 현재	500천 원
17	일반음식점	2016.06.08	-	2020.02.06. ~ 현재	500천 원
18	일반음식점	2020.02.11	-	2020.02.11. ~ 현재	500천 원
19	일반음식점	2005.03.14	-	2020.05.07. ~ 현재	500천 원
20	일반음식점	2015.11.16	-	2020.05.11. ~ 현재	500천 원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표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 미제출 현황

연번	업종명	업소명	미제출 내역	제출기한	미부과 과태료
계	54개소				27,000천 원
1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2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3	집단급식소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4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5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6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7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8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9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0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1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2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3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4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5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6	집단급식소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7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8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19	일반음식점	<del>-</del>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20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21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22	일반음식점	-	'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8년 2월말	500천 원

23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4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5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6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7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8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29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0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1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2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3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4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5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6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7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8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39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0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1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2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3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4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5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6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7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u> </u>				

48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49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50	휴게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51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52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53	집단급식소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54	일반음식점	-	'1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2019년 2월말	500천 원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감독이 부족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미신고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등록된 다량배출사업장 중 전년도의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미제출 업체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 2 및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실무담당자 OOOO OOOO OOO, 실무책임자 OOOO OOOO OOO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조치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페기물관리법」제15조의 2 및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리계획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과 페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한 실무담당자 OOOO OOOO OOO, 실무책임자 OOOO OOOO OOO에게 그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랑배출사업장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요구

제 목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실)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함안군 사회취약계층 행사지원 조례」에 따라 2017~2019년까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따른 경비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표1】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추진 개요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사업명	보조사업자	신청일	위원회 심의일	연도	사업비(군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At)@@@@ @@@@@@	'16. 9. 26.	'16. 10. 28.	2017년	**,***
			'17. 9. 22.	'17. 10. 30.	2018년	**,***
			'18. 9. 19.	'18. 10. 25.	2019년	***,***

# 2.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13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제14조에는 제1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 결정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제33조에서는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재무관")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제19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배정은 ◈실장이 행하며, 본청 담당관·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기타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 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하고 그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무회계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 관한 사무에 관해서만 재배정하여야 하며, 민간행사보조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에게 정당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과에서는 아래 [표2] 와 같이 읍·면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한 예산을 읍·면에 지원하기 위해 2017~2019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보조사업자로 (사)◎◎◎◎◎◎◎◎◎◎◎◎◎◎◎◎◎◎◎ 신청하게 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당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하지 않고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는 관내 개별 단체에 지급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였으며.

또한, ◈실에서는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에게 교부결정되어야 할 예산임에도 ○과에서 재배정 요청한 민간행사보조금을 타당성 검토 없이 매년 읍·면에 재배정한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에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지방 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실무 담당자 ○과 지방◎●◎●주사보 ◎●◎, ○과(현, ◎●◎) 지방◎●◎●◎ ●◎●, 실무책임자 ○과(현, ◎●◎●») 지방◎●◎●◎ ●◎●,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재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 ●◎●실(현, ◎●◎●실) 지방◎●◎● ●◎●, ◎●◎●실(현, ◎●면) 지방◎

- ●●● ●●●, 실무책임자 ●●●●실(현, ●●●●과) 지방●●●● ●●●, ●●●실(현, ●●●●과) 지방●●●● ●●에게는「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고,
- 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재배정하여 읍·면에 재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게 교부하여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에 노인의 날 행사 관련 행사운영비와 통합하여 읍·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등 보조금 집행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앞으로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7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요구

제 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O O 과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조달청이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제작)에 따라 제작·구매하고 있다.

### 2. 분할 제작·구매절차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의 라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할 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sup>25)</sup>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8-24호, 2018. 12. 21.) 제3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 간경쟁제품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4조에서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분할 발주 구매를 추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받아 조달청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OO과에서는 2017~2018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따른 제작·구매하여 추진하다가, 아래 【표2】와 같이 2019~2020년도에는 연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 예산이 1억 원 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2단계 경쟁

<sup>25) 「</sup>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자인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음.

제안 요청을 통하여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구매한 것은 일괄 제작으로 물품 보관·관리 및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에 대해 명백히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님을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sup>26)</sup>에 인정받아야 함에도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분할발주 구매한 사실이 있다.

### 3. 물품 검수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함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6항에 의하면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계약 담당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7. 11. 30. 환경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검수는 검수공무원이 수량, 크기 등을 확인한 후 검체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 표준규격(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적합여부를 분석·의뢰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OO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 후 시험기관에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후 검수 완료를 해야 함에도, 아래 【표3】과

<sup>26)</sup> 조달청지침 「구매업무심의회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같이 총 4건에 대해 검사결과 도착 전 검수 완료 처리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O O 과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조달청 고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 처리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여 향후에는 제2단계경쟁을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를 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구매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파(현, ○○과) 지방◎●◎● ◎●◎, 실무책 임자 ○○과 지방◎●◎● ◎●◎, ◎●◎●과(현, ○○과) 지방◎●◎● ◎◎ ●에게「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의 거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또한, 쓰레기 봉투 제작·구매 시 재고 수량을 감안하여 연간 구매계획을 수립한 후「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통합발주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절감과 다수업체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받아 구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9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참가자격 중복 제한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ㅇㅇㅇㅋ)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함안군 ○○○○파에서 ○○읍 ○○리, ○○○지내 국지도\*\*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 검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하고 용역업체를 아래【표1】과 같이 선정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문 상에「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한 업체(설계, 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분(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검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전문가 자격(CVS, CVP, KCVS 등)중 1개 이상 보유한 자로 상기 모두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설계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지침」제50조(설계 V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서 설계 VE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는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② 발주청 소속직원 ③ 설계 VE 검토업무의 수행경력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연구용역 등)를 수행한 자 ④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어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중복으로 제한하는 사안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에서 계약 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며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 ※ 공사는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파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④ 지역제한(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VE 자격소지)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에도 중복 제한하여 VE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파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 (VE) 용역이 혼재하여 중복제한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분히 연찬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국지도 \*\*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VE)검토 용역'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제한경쟁 입찰에서 제한의 기본원칙인 용역계약 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투찰 가능한 업체의 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시고 이와 같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 및 직무교육 강화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0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및 산림사업 감독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의 산림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다.

#### 2.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부문은「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정한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공사 종류별로 금액 한도를 정하여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표1】과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표1】수의계약 구분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그 밖의 계약 <sup>27)</sup>	비고		
수의계약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추정가격	지정정보처리		
(2인 이상 견적)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장치 이용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b>エ</b> 671首。	2건간 편 이야		장치 미이용		

아울러, 숲가꾸기사업은 감사원의 ○○청 기관운영감사 시(2011년) 수의계약 금액한도와 관련하여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사업을 정의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조문에 공사에 대한 정의가 없거나 공사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등 공사 관련 법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에해당되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처분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발행된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숲가꾸기 예산집행 및 관리분야)<sup>28)</sup>과 매년 발행·배포 되는「경상남도 산림시책」(숲가꾸기세부추진계획 예산 집행)에도 숲가꾸기사업은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감사원 감사사례<sup>29)</sup>를 시군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계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과를 통해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소액 수의계약(2인 견적 등)이 아닌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 진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과에서는 【표2】와 같이 관련 규정에 구체적 확인 없이 \*\*과

<sup>27)</sup>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sup>28)</sup> 숲가꾸기 예산집행(2015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sup>0</sup> 숲가꾸기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

<sup>-</sup>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시 숲가꾸기 사업은 계약 관련 법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해당하여 5천만 원 이하로 적용 필요

<sup>29)</sup> 道 ○○○-\*\*\*\*(20○○. 11. 12.) 감사사례 알림(숲가꾸기사업 관련)

에 계약 요청했으며 ○○과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입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으며, 시군에 감사사례를 알렸음에도 소액 수의계약 하는 등 총 23건을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 참여기회를 제한하였다.

# [표2]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현황(2인 견적 이상)

(단위 : 천 원)

연도	사업명	계약일	기초금액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계 : 23건		1,602,26 0	1,405,15 4	
	2017년 **지구 숲가꾸기사업	2017-6-8	83,885	72,906	(주)\$\$
	2017년 @@@지구 숲가꾸기사업	2017-6-8	85,506	75,711	(주)**
	2017년 춘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행	2017-6-13	55,243	48,252	(주)**
0017	2017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7-6-19	63,577	56,000	(주)\$\$
2017	2017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7-6-19	56,978	49,884	(주)&&
	2017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7-6-19	56,260	49,576	@@군&&&&
	2017년 하반기 숲가꾸기사업(‱지구)	2017-12-13	80,099	70,176	@@군&&&&
	2017년 하반기 숲가꾸기사업(‱지구)	2017-12-12	81,023	70,420	(주)\$\$
	2018년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	2018-6-11	48,788	42,755	@@군&&&&
	2018년 덩굴제거사업(&&지구) 시행	2018-6-12	73,362	64,215	(주)\$\$
	2018년 덩굴류 제거사업(\$\$지구) 시행	2018-6-12	61,946	54,223	(주)\$\$
2018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8-6-12	68,888	60,299	(주)\$\$
2010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8-6-14	57,002	50,223	(주)%%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8-6-14	87,543	76,609	(주)&&
	2018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8-6-15	78,249	69,286	(주)**
	2018년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지구)	2018-11-29	65,624	57,746	(주)**
	2019년 &&권역 숲가꾸기사업 시행	2019-4-08	86,486	75,455	(주)**
	2019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9-6-13	64,932	56,855	@@군&&&&
0010	2019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9-6-13	57,917	50,712	@@군&&&&
2019	2019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9-6-13	66,402	58,467	(주)\$\$
	2019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지구) 시행	2019-6-13	63,217	55,380	(주)%%
	2019년 덩굴 제거 사업(\$\$지구) 시행	2019-6-13	85,271	75,326	(주)&&
2020	2020년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권역) 시행	2020-4-20	74,062	64,679	(주)**

출처) @@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발주자의 승낙 없는 현장대리인 배치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 배치기준 등)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sup>30)</su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산림청훈령)제19조(현장대리인) 제3항 및 같은 지침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600ha 이하 사업장은 현장대리인 1인 이상을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 이하로 동일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대리인을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할 경우 발주부서인 %%과의 승낙을 받았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과는 【표3】과 같이 '2017년 @@%%지구 숲가꾸기사업' 등 8건 숲가꾸기 사업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현장대리인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림사업 현장의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3】 발주자 승낙 없는 현장대리인 배치 현황

(단위 : 천 원)

ОНН	л о в			기 간	게야그애	현장	СЭП
선민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대리인	노급사

<sup>30) 1.</sup>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 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OT HI	П О П			기 간		현장	C 3 T
연번	사 업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대리인	도급자
	2017년 @@%/자구 숲가꾸기사업	2017-6-8	2017-6-9	2017-6-29	47,632	@@@	(주)\$\$
1	2017년 **지구 숲가꾸기사업	2017 <del>-6-8</del>	2017-6-9	2017-6-28	72,906	@@@	(주)\$\$
	2017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지구)	2017-6-19	2017-6-20	2017-7-17	56,000	@@@	(予\$\$
2	2017년 산지자해방지림 숲기꾸기사업 (재선충방제+\$\$지구)	2017–11–1	2017-11-2	2017-11-28	45,037	@@@	(予\$\$
	2017년 산자자해방지림 숲가꾸가사업 (재선충방제+%%%자구)	2017-11-1	2017-11-2	2017-11-29	55,406	@@@	(주)\$\$
3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구)	2017-6-19	2017-6-20	2017-7-28	39,883	@@@	@@ <del>ැ</del> &&&&
3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자구)	2017-6-19	2017-6-20	2017-7-28	49,576	@@@	@@ <u>ට</u> &&&&
	2017년 산지재배당지림 숲가꾸기사업 (재선충방제-%%기구)	2017-11-1	2017-11-2	2017-11-28	40,384	@@@	@@ <del>ැ</del> &&&&
4	2017년 산자자해방지림 숲가꾸가사업 (재선충방제+%%%자구)	2017-11-1	2017-11-2	2017-11-28	60,427	@@@	@@군 &&&&
5	2018년 덩굴류제거시업 (&&지구)	2018-6-12	201 <del>8-6-</del> 15	2018-7-13	64,215	@@@	( <del>↑)</del> \$\$
)	2018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구)	2018-6-12	2018 <del>-</del> 6-15	2018 <del>-8-</del> 31	60,299	@@@	(₸)\$\$
6	2018년 신지자해방지림 숲가꾸기사업재선충모두베가\$\$**지 구)	2018-11-6	2018-11-8	2018-12-5	45,462	@@@	(주)**
	2018년 해반기 숲가꾸기사업**지구)	2018-11-29	2018-11-30	2018-12-20	57,746	@@@	(주)**
7	2019년 신지재해방지림 숲가꾸가사업 (재선충방제•\$%%%%)	2019-4-1	2019-4-2	2019-4-17	49,788	@@@	(주)**
	2019년 &&권역 숲가꾸기사업	2019-4-8	2019-4-10	2019-5-27	75,455	@@@	(주)**
8	2019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구)	2019-6-13	2019-6-17	2019-6-25	56,854	@@@	@@군 &&&&
J	2019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구)	2019-6-13	2019 <del>-6-</del> 17	2019-6-25	50,712	@@@	@@ <del>Z</del> &&&&

출처) @@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업 기준 변경에 대한 업무 연찬이 부족 한 상태에서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고 업무 연찬 및 공유로 변경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감사사례와 산림청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및 「경상남도 산림시책」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 @@@,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 @@@에 대하여「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숲가꾸기사업은 소액 수의계약 규모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적용하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1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신용카드 회계 처리절차 부적정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

함안군(\*\*\*\*, \*\*\*, @@@, \$\$\$\$과, &&&&과, %%과, \*\*\*과, 조 치 기 관 &&&&과, @@@, &&&&,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부서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용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

#### 2. 신용카드 회계 처리절차 미준수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2항에는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사전 "품의" 후 "원인행위(신용카드 사용 지출)"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사전 "품의" 후 "원인행위(신용카드 사용 지출)"를 진행하고 이용대금을 "지출"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과와 \$\$\$\$에서는 【표1】과 같이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인 품의에 앞서 원인행위인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최소 2일에서 최고 203일이 경과한 뒤 품의를 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정상 결제되지 않고 연체되는 등 세출예산 집행품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표1】사전 품의 없는 신용카드 사용 및 대금지급 경과 내역

(단위 : 천 원)

부서명	카드사용	품의일	경과일	금액	집행내용	정상결제일	실지급일	경과일
&&&&과	6. 4.	12. 23.	203	40	&&사업 업무추진 만찬	6. 27.	12. 27.	184
(2019년)	8. 9.	12. 24.	138	73	&&구입 8. 27.		12. 21.	123
%%%%	5. 22.	11. 29.	192	50	%%협조자 오찬제공	6. 12.		171
(2019년)	6. 25.	6. 27.	2	300	######## ## 구입비 지급	7. 12.	11. 29.	141

출처) @@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이용대금 미결제 및 연체료 처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 및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등 5개 부서는 【표2】와 같이 총 7건 2,214천 원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이 발생하는 동안 정상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에서 180일까지 지연 입금 하였고 이에 따른 연체료 3,218원이 공금으로 납부되었으며, 특히 &&&&마에서는 2018년부터 2년간 카드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 【표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및 연체료 내역

(단위 : 원)

연도	부서명	결제계좌	결제일	결제금액	미결제금액	연체료	연체료 재원
	계				2,214,239	3,754	통장잔액 (3,218)
2017	@@@	***285	10.12.	1,348,800	236,368	777	
2018	\$\$\$\$\$	***730	9.27.	1,712,490	289,205	473	통장잔액
	\$\$\$\$과	***124	1.12.	8,250,800	652,881	536	개인변제
	&&&&과	***285	5.12.	2,978,000	512,113	629	
	&&&&과	***85	9.12.	1,332,000	231,661	94	
2019	%%%%%	***30	9.27.	1,618,920	194,044	78	통장잔액
	&&&&& (2018~2019 카드사용내역 미결재)	852010**	11.27.	1,832,200	97,967	1,167	

출처) @@군 제출자료 재구성

# 4. 예금이자 및 포인트(인센티브) 세입조치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27조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3.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보관·관리 및 4.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실·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이자가 인센티브 (포인트)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했어야 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 등 10개 부서에서는 【표3】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예금이자 98,847원과 포인트 314,002원 등 총 412,849원이 당해 연도 세입에 편성되지 않아 예금이자 및 인센티브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3] 법인카드 포인트 및 예금이자 세입조치 미이행 내역

(단위: 원)

구분	발생일자	내역	금액	비고
계 : 53건(예급	글이자 50건 101,27	77 / 포인트3건 314,002)	412,849	
	2018-6-24		880	
	2018-12-23		1,544	
\$\$\$\$\$	2019-6-23		1,317	
	2019-12-29		1,711	
	2017-6-25		1,415	
	2017-12-24	예금이자 발생분	1,448	
  **과	2018-6-24		1,679	
^^편	2018-12-23		1,649	
	2019-6-23		1,572	
	2019-12-29		1,767	
%%과	2017-12-24		2,100	

	2018-6-24		2,440
	2018-12-23		2,190
	2019-6-23		1,670
	2019-12-29		1,240
	2017-6-25		2,810
&&&&과	2017-12-24		2,350
	2018-6-24		4,260
	2018-12-23		3,360
	2019-6-23		3,590
	2019-12-29		4,390
	2017-12-24		3,119
	2018-6-24		3,246
\$\$\$\$\$과	2018-12-23		3,370
ΨΨΨΨ	2019-6-23		2,208
	2019-12-29		2,365
	2017-6-25		1,212
	2017-12-24		1,247
	2018-6-24		720
&&&&과	2018-12-23		448
	2019-6-27		706
	2019-12-29		454
	2017-6-25		950
	2017-12-24		1,030
	2018-6-24		820
\$\$\$\$	2018-12-23		950
	2019-6-23		1,070
	2019-12-29		1,500
	2018-6-24		4,480
	2018-12-23		2,400
@@@	2019-6-23		2,230
	2019-12-29		2,020
	2017-6-1~	BC포인트	22,898
	2018-12-13	DCT L'—	880
	2019-6-23	예금이자 발생분	1,240
&&&&	2019-12-29	에타이시 글이正	1,300
	~ 2020-5	BC포인트	163,420
	2019-3-25	BC포인트	127,684
	2017-12-24	レベエピニ	2,860
	2018-6-24		2,910
&&&&	2018-12-23	예금이자 발생분	2,110
		에ㅁ이시 글경군	·
	2019-6-23		2,920
	2019-12-29		2,700

출처) @@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의견

@@군 &&&&과와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미숙과 업무 연찬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 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 인수인계시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되도록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를 위반하여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고 결제계좌 관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마(현 %%%%과) 지방##\$\$\$ \*\*\*, \$\$\$\$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신용카드 이용대금 미납으로 결제계좌에서 공금으로 납부된 연체료 3,218원을 "변상" 조치하시고, 예금이자 98,847원과 포인트 314,002원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 및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보관·관리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카드사용내역을 보고하고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2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과)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 \*\*\*,\*\*\*천 원을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입찰방식 검토 시간 소요의 사유로 2019년으로 사고 이월하여 구매·보급하였다.

#### 2. 대가 지급 부적정 및 채권 확보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되,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하거나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계약상대자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의 방법으로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과와 ◆◆◆◆과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매 입찰 시 공기청정기 제품 공급과 3년간 필터 교체 및 세척 용역이 포함된 내역을 예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였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납품 시 물품 공급에 대한 부분의 대가를 지급하고, 필터교체 및 세척 용역(3년간)의 대금은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 용역 수행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함안군에서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납품 후 물품 공급의 부분금이 아닌 유지관리 용역비용이 포함된 계약금액 전액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일반용역 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면서 공고문에 3년간 유지관리 대금지급의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채권을 확보하려고 공고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이행보증 채권을 제출받지 않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 이행의보장과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한 사실이 있다.

#### 3.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등 검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용역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마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이행결과를 분기별로 제출받아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사유를 확인하여 재점검 요청 또는 직접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용역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용역 이행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용역 수행을 정지하였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보하여 적정한 용역 수행과향후 용역 재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와 구두로 합의를하는 등 용역 정지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4. 낙찰자 결정방법 검토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중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 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표2**】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표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물품납품	이행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심사분야	기술능력 <sup>*</sup>	경영상태	입찰가격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부정당 제재 등
배점한도	10	30	60	+2~-2		-40	

<sup>\*</sup> 기술능력의 평가는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sup>※</sup> 물품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부터 평가기준에 적용 출처)「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표 인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이상인 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표3】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3]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일반용역의 평가기준

		해당용역		결격사유		
심사분야	최근 3년 내 이행실적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입찰가격	재무위험
배점한도	27	20	3	+8.5~-2.0	50	-20

#### \* 기술능력의 평가는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출처)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낙찰자 결정 기준 인용

따라서, 물품과 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을 발주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고,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과와 ◈◆◆◆과에서는 공기청정기 구매(물품공급)와 유지보수 (일반용역)가 혼재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기청정기의 물품공급과 일반용역 특성에 적합하고 계약기간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함안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 종류별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85점 이상 적격자로 선정)의 주요항목은 입찰가격(60점)과 경영상태(30점)이고,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95점 이상 적격자로 선정)의 주요항목은 이행실적(27점), 경영상태(20점), 입찰가격(50점)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공기청정기 납품 이후 안정적인 용역 수행과 이행기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행실적, 경영상태, 입찰가격이 포함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유리하였음에도,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단지 물품 공급이라는 사유로 "물품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이 된 사실이 있다.

#### 5. 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④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파에서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 예산을 2018년 제2회 추경예산(2018. 9. 20. 의결) 시 확보하여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이월하면서 해당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세출예산 취지를 분명히 밝혀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방식 검토시간 소요에 따른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이월 처리한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마와 ◈◆◆◆화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보급 계획과 동시에 연내 보급 완료를 목표로 시급성을 강조하여 왔고,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율이 낮고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 ◎◎◎◎부에서 보급방법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계속 수정된 상황임에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내 371개소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였고, 계약 당시 제출받지 아니한 계약이행보험증권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② 계약 체결 당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한 계약보증이행증권을 빠른 시일 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고, 유지보수 기간 내 검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물품과 용역이 혼재되어 있는 계약을 추진할 시 사업 내용과 목적 등 과업 수행에 적절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비교·검토 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23 】

# 감사결과 처분요구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디지털 항공사진 구매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핚안군(ㅇㅇㅇ과)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는 항공영상을 이용한 업무 처리 비중 증가와 택지개발 등 각종 인·허가로 급변하는 함안군 전역의 지형·지물 변동사항 관리를 위해 최신의 항공사진을 구입하여 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활용하고 있다.

#### 2.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조 및 「지방회계법」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아래의 ①~④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②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③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 ④ 위의 가격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파에서는 2018~2019년 항공사진 구입을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⑩⑩⑪⑪, , ◈◆◆◆◆ ◆ ③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

함안군 ○○○○파에서 항공사진 구매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유사사업의 기초가격을 확인해 보면, 【표2】와 같이 면적과 과업내용에 따라 다르지만하나의 시·군의 항공사진은 약 \*\*,\*\*\*천 원에서 \*\*,\*\*\*천 원의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함안군 ○○○○파에서는 3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과 다른 지자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기초금액을 검토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관련업체의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등과 아무런 비교·검토 없이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약 \*\*,\*\*\*천 원에서 \*\*,\*\*\*천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낭비한 사실이 있다.

#### 3.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①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②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③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그리고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 규정(조달청 훈령)」제3조에 따르면 공급자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제조자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발주자(수요기관)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 ②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 ③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
- ④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또한, 구매할 물품이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물품 및 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공급자로 등록된 자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계약 이행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르면 "측량업"은 측지측량업, 지적측량업,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항공촬영 및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하면 "항공촬영업"은 항공기를 이용한 측량용 공간영상정보 등의 촬영·제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처리업"은 측량용, 공간영상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사사진 지도 제작 및 입체영상지도의 제작과 그에 관련된 좌표측량, 영상분석·지리조사 및 제작, 데이터의 입력·출력 및 편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계약은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 구매계약과 별도 주문한 규격에 맞게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 제조계약으로 나누어 지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어 원재료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는 물품 제조계약, 제조활동이 없는 경우는 물품 구매계약으로 분류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마에서 구입한 항공사진은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 구매계약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물품공급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공간정비 DB구축 서비스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업체, 측량업(항공촬영업), 측량업(영상처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관련

법령상 기술용역의 해당하는 자격요건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함안군 ○○○○파에서 입찰 참가자격 조건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조달업체 정보를 확인해 본 바, 입찰참여 가능한 업체는 18개소로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다수업체의 공정한 입찰 참여기회를 상실하게 한사실이 있다.

# 4. 계약방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기술용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등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계약 이행능력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목적물별 계약방법으로는 "공사계약"(종합,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등),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되며, 계약방법 선택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 등 관련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체결 전에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 후 그에 따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에서 구입한 항공사진은 완성된 목적물을 구매한다는 사유로 물품 공급을 계약방법으로 결정하여 입찰 공고하였고, 공고문의 구매 시방서에 따르면 20\*\*년 \*\*월경 발주한 사업은 20\*\*년 \*\*월 \*\*일 이후 취득한 영상으로, 20\*\*년 \*월경 발주한 사업은 20\*\*년 \*월 \*\*일 이후 촬영한 영상 성과품을 증빙자료(국방부 항공촬영 허가 공문)와 함께 착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에 게재하였다.

또한, 20\*\*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에는 납품 사진첩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20\*\*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와 산출내역서상 과업의 주요내용은 디지털 항공사진을 구매하여 정사영상으로 제작·편집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용역 관련 서류(착수계, 용역 수행대리인계, 용역 수행대리인 재직증명원, 용역대리인 경력수첩 사본, 용역업자서약서, 예정공정표, 용역참여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 실제 과업은 물품 공급이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완성되어 있는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정사영상을 편집·제작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함안군 ○○○○과에서 발주한 항공사진 구입사업은 완성된 목적물을 납품하는 사업이 아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촬영업과 영상처리업을 등록한 업체가 항공촬영 후 해당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용역"의 사업으로 계약방법을 "물품공급"이 아닌 "기술용역"의 계약방법으로 발주를 하였어야 했다.

따라서, 함안군 ○○○○마에서는 "항공촬영업"과 "영상처리업"의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 충분한 과업기간을 통해 "기술용역"의 계약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항공사진을 납품 받아야 함에도, 물품 공급으로 부적정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특정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참여 가능하도록 구매조건을 과대하게 제한하는 등 항공사진 구매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 ○○○○파에서는 기술용역으로 발주 시 물품 공급의 계약방법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계약방법을 결정하게 되었고, 타 시·군보다 기초금액이 높았던 이유는 ○○공항, ○○○○ 군사시설 등의 특수성으로 항공촬영 단가가 높아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과업기간, 원가 계산을 통한 예정가격 산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측량대가기준」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처리해야 했으므로 이 같은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함안군에서 비교한 ○○시의 항공사진 구입 건의 경우 ○○시 463k㎡ 및 인근 시 외 지역 1,333k㎡까지 촬영하는 과업으로 함안군 촬영지역(416k㎡) 보다 과업량이 많아 기초금액이 높아진 것으로 ○○공항등의 사유로 단가가 높아졌다는 의견은 인정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여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 계약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실무담당자 ○○○○과(현 ◎◎면) 지방◎◎◎◎ ◎◎◎ ◎◎이 ○○○ 지방◎◎◎◎◎ ◎◎◎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항공사진 및 정사영상을 별도 가공 없이 완성품으로 구매하는 단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해당물품 분류번호로 납품 가능한 자로 적용하시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촬영업, 영상처리업 등 관련자격 필요시에는 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2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도로개설공사 하도급관리 및 공사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과)

조 치 기 관 합안군(@@과, ##과)

내 용

#### 1. 업무개요

함안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00도로 개설공사」는 2019.11. 6. \$\$시 소재 A건설과 도급액 3,088백만 원에 계약 체결하여 같은 해 11.14. 착공하고 2021.11. 2.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 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 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하도급 비율,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최근 1년간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여부,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 5]에 따르면 수급인은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하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 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 설계변경에서는 설계서의 내용이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와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가.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 소홀

함안군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 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서 토공사업은 B회사에게 하도급 하는 것으로 하도급관리계획하여 평가받은 5점을 포함하여 적격심사 평점 95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며,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착공계의 직접시공계획내용에도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는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제출하였는데도,

토공사인 흙깍기와 암 발파 공종 등 전체 30%의 공정이 추진 중인 현재까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과 다르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토공사업에 대한 하도급 예정자로 정한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받은 공사의 전 공종을 직접 시공하고 있는 등 하도급관리계획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함안군은 본 공사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청인 함안군의 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과 다르게 전 공종을 직접 시공하고 있는데도 공사착공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사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아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도급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나. 예산낭비요인에 대한 설계내역 검토소홀

함안군은 계약상대자가 시공하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함안군은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생태 터널시공을 위한 절개지는 시공 후 성토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암 절취 및 발파에 따른 별도의 절취면 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면 고르기 비용을 반영하여 공사비 약 36,425천원 상당의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며,

생태터널 시공 후 성토를 위한 성토재료는 암 절취 및 발파로 파쇄 된 골재의 파쇄 모양이나 규격에 따라 추가적인 가공작업 없이 성토가 가능한 골재를 용도에 맞게 분류하여 유용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암 소할비용을 반영하여 공사비약 33,740천 원 상당이 낭비될 우려가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절토사면 녹화를 위한 녹생토 시공구간은 지면으로부터 수직고가 20m 미만인데도 높이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어 있고, 녹화재료인 부착망 자재는  $10m^2$ 당물량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m^2$ 당으로 산정하여 부착망이 10배 많게 적용되어 있는 등으로 공사비 약 293,664천 원 상당이 과다 반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만 하고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생태터널 시공에 따른 암 절취 및 발파로 생산되는 발생 암은 함안군에서 온비드를 통한 공개매각 절차를 통하여 현장에서 상차하는 조건으로 운반비용은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암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발생 암을 반출 중에 있는데도 사토운반 조정에 대한 실정보고만 하고 설계에 반영된 운반비용 약 570,544천 원상당을 감액하지 않고 있는 등 현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경우 위 도합 약 934,373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데도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관련법령 연찬부족과 하반기 신속집행 등 업무량 과다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과 설계검토가 미흡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과다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는 빠른 시일 내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하도급관리계획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도급 조건대로 하도급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도급관리계획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과 현 실무담당자 C 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하여 평가받은 하도급관리계획과 다르게 하도급 계획공종에 포함된 토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하도급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관리계획대로 하도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③ 또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 등에 대한 검토소홀로 과다 반영되어 있는 공사비약 934,373천 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계약 및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일련번호 :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 의 요 구

제 목 수도사업 인가절차 미 이행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과)

내 용

#### 1. 업무개요

함안군에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등으로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일반수도를 적정하고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으며, 시·도지사가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인가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 환경부장관
- 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라.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따라서, 함안군은 배수지 신설 등 수도시설에 대한 일반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근거로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변경포함)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안군에서 시행한 다수의 수도사업은 「수도법」제17조에 따른 시설용량 1만 톤/일 이하인 지방상수도 사업으로서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수도사업 인가대상 사업인데도 군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만 이행(일부 미 이행)하고 수도사업 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의 의미를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계획된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등을 기초로 수도법

에서 정하는 적절한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수도사업자로서의 경영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함안군 강변여과수 개발(〇〇정수장)시 인가된 시설용량의 증감 없이 계획 급수구역 내 개별 수도공사건은 인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수도사업 인가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및 상급기관과협의하여 인가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감사지적 이후추진하는 지방상수도공사건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절차를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①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도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처 및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인가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담당직원들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대한 집합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하는 수도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요구

제 목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준공(기성)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과)

조 치 기 관 함안군(@@과)

내 용

#### 1. 업무개요

함안군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 위생 개선 등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홍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검사) 및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수행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하수도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설계 시시공이나 사업을 준공할 때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여야 하며, 관로의 수밀검사 및 CCTV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관거공사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실시하되 하수관거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분리발주하거나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규정(환경부 하수67712-000, 2003. 5.22.)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2-10 관거시공 및 준공검사 편에 따르면 관거시공에 따른 경사검사와 수밀검사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부검사인육안 및 CCTV조사는 단계별로 시공이 완료된 일정규모이상의 블록단위별로본 복구(포장)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방서에는 개착공법으로부설되는 모든 관거는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에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와CCTV를 통한 내부검사를 하여 수밀검사와 CCTV 및 육안조사 등 품질시험결과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상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함안군은 공사 도급계약과 분리하여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수밀시험 및 하수관 내부 CCTV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시공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관거 시공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을 시공단계별로 실시하고 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에는 품질시험 성과품 등을 확인한 후 기성 또는 준공처리 하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함안군은 하수관거 시공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수밀시험 및 CCTV조사 등)을 차수분 준공 및 기성검사 전에 시공된 물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고 시공물량 일부에 대한 검사를 누락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기성)처리함으로서 시공단계별 적정시기에 품질확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총체분 준공 전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잔여 시공물량에 대하여 일괄시험을 실시하는 등 하수관 시공에 따른 시공단계별 적정시기에 품질검사를 누락하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품질확보를 확인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등 하수관 시공에 따른 공사관리관으로서의 현장관리 및 준공(기성)검사 입회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안군은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업무숙지 부족으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준공 및 기성검사 시 품질시험·검사성과를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관로시공 후매몰부분에 대한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사진, 맨홀 육안검사만 확인한 후 준공및 기성검사를 처리하였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를 성실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하수관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품질시험을 시공단계별 적정시기에 실시하지 않고 하수관시공의 적정성 확인 없이 준공(기성)처리하도록 공사관리관 으로서의 현장관리업무와 준공(기성)검사 입회업무를 소홀히 한 @@과 전 실무담당자 A와 B, 현 실무담당자 C 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앞으로 하수관시공에 따른 품질검사는 시공단계별 적정시기에 해당 품질시험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준공 및 기성검사 시에는 반드시 시공단계별로 실시한 검측자료(수밀시험, 연막시험 및 관 내부 CCTV조사 성과품 등)등을 면밀히 확인 후 준공(기성)처리 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 \diamondsuit \Leftrightarrow \diamondsuit \Leftrightarrow \diamondsuit \Leftrightarrow ,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에서 추진 한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방식의 사업시행자로서 ㈜※※일반산업단지의 주주회사는 16개 업체로 2011.12. 5. 착공하여 2015. 4.30. 준공인가 하였음

산업단지명	위 치	지정면적 (㎡)	최초 승인일	사업비 (억원)	사 업 시행자	조성기간	비고
※※일반산업단지	○○면 ※※리 산○○○-○일원	294,099 (89,120평)	2010.11.10.	485	㈜※※일반 산업단지 (주주회사 16개업체)	2011.12. 5. ~ 2015. 4.30.	준공인가고시 (2015.4.30.)

※ 입주현황 : 39필지 중 31개 업체 입주계약(11개 업체 가동 중)

- ※※일반산업단지의 주주회사(16개 업체) 입주현황 없음

#### 2. 진입도로 미완료 산업단지 준공인가 처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항에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제8항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같은 법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8항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제2항에서는 법 제37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가 설치한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 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전 사용신청서) 별지 14호 서식에는 신청내용 (면적, 용도 등)을 명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감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 수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안군에서는산업단지 지구외 진입도로를 개설 및 준공하지 않았음에도 보완시공 등 필요한조치를 명하지 않고 준공인가 한 사실이 있다.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8항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함안군은 부분준공으로 처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지구외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함안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 또는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보완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입도로 사업시행기간을 3회에 걸쳐 연장해 준 사실이 있으며,

함안군의 과실로 준공인가(2015.4.30.)를 하였음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준공인가를 취소하고 부분준공처리 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5년간 소극행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대표자로 있던 ㈜●●●● 대표 ◎◎◎◎이 2019. 4.30. ㈜◇◇◇◇◎에 매각하여 사업시행자 대표가 처분제한 기간동안에 매각처분 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야 할 진입도로가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사인 ◆◆◆◆◆◆◆ 대표 □□□도 매각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함안군에서는 뒤늦게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사업시행자 주주회사의 처분제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시점부터 현재까지 함안군 관련부서 업무 진행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준공인가 시점에 업무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업무인계·인수를 정확히 받지 못하여 업무연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됨에 따라 그 당시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직원 및 상급자들에게 업무 협의와 결재를 통하여 처리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다르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분준공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준공인가하고 산업단지 외의 진입도로는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별도로 준공인가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지도 및 협조 받아 처리함으로써 실시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준공인가 되는 과실을 초래하였다.

그 이후 본 산업단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음을 알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촉구하였으나, 제출된 진입도로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확실한 담보나 조치계획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과실로 준공인가 됨으로써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해 주는 등 또다시 과실을 범하여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초를 제공하여 현재까지도 진입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진입도로개설을 위한 조치가 어렵게 된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1]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준공인가 비교 도면

<b>당초</b> [실시계획승인 도면]	<b>준공</b> [준공인가 도면]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3.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제한 위반

_	(주)※※일반산업단지	주주회사	명단(16개사)
---	-------------	------	----------

순번	회사명	대표자	소유부지	면적(㎡)	등기소유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1항에서는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각호 제1호에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 ○○○○○에서는 2015년 ※※일반산업단지의 실수요 개발 사업시행자인 (주)※※일반산업단지의 대표이사인 (주)●●●이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에 불법 매각 처리하고 매각 후에 처분 신고를 하였음에도 함안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수리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주) 대표이사는 2019년 2월경부터 교통과 입지조건이 적절한 함안군에 공장설립을 희망하여 함안군 관내 본사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부지가 있는지수차례 ■■■■(현 ☆☆☆☆☆)에 방문하여 입주상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주)●●●●이 2018년 7월 처분신청하여 함안군이 공개 매각절차인 처분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산업시설부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양도대상자(입주계약신청자)가 미 선정되었으며, 2019년 2차 처분신청에 대하여 산집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제3호의 근거로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다는 사유로 (주)●●●●이 추천한 ◇★★★★(주)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통지 이전에 (주)●●●● → ◇◇◇◇(주)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주)로 이전되어 있어 위법함에도 함안군에서 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처분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이면서 대표자인 (주)●●●(대표 ◎◎◎)을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제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진입도로 개설요구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4. 농어촌도로의 도로정비허가 사항 조치 미이행

- 농어촌도로의 도로정비허가 현황

도로명	위 치	공사개요	승인일	사 업 시행자	조성기간	비고
농어촌도로	○○면	도로확장		㈜※※일반산업단지	2015. 9.23.	
○○***,	※※리~○○면	L=746m,	2015. 9.23.   <sup>=</sup>		~	50%
○○***호	○○리 일원	B=8.0m		대표 스스스	2020. 6.30.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5조(도로의 정비) 제2항에서는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의2(도로점용 인공구조물 등의 이설 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인공구조물·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을 제5조에 따른 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설(移設)하여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郡)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같은 법 제25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관리청 허가조건 12.에는 허가된 본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할 시 도로관리청인 함안군과 별도 협의하여 도로의 원상복구 및 차선의 개선방향을 협의·결정하여 피허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조건 13.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나, 상위계획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도로관리청의 부득이한 사정발생 시 본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허가사항이 취소(변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설물 철거 및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아무런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허가 하였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농어촌도로의 비관리청공사 허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군수 외의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용은 도로정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의 취소,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허가조건에는 허가된 본 사업의 정상추진이 불가할 시 도로관리청인 함안군과 별도 협의하여 도로의 원상복구 및 차선의 개선방향을 협의·결정하여 피허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나, 허가사항이 취소된 때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설물 철거 및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비관리청 허가 하였으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에 따라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함안군 ★★★★★에서는 ※※일반산업단지 농어촌도로 비관리청공사 허가 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일반산업단지에서 농어촌도로 비관리청공사 공사를 추진하다가 약 5년간 공사 중단되어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차량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사업기간 연장 허가 한 사실이 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허가조건에 따라 피허가자인 ㈜※※일반 산업단지에 도로정비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약 5년간 방치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재정악화와 관련 법령 조치 미비 등의 사유로 농어촌 도로 비관리청 허가사항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일반산업단지 비관리청 허가 미개설 전경사진

전경사진		전경사진	
	l I		

#### 관련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함안군 관련부서 실무담당자 들의 경위서 제출 등 감사결과 고의성은 없고 업무미숙과 법령연찬 부족에서 발생되었음으로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②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함안군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지구 외 사업(진입도로)은 같은 법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준용)에 따라 승인고시 하였고, 준공 당시 확장 계획인 진입도로가 기존 2차선도로로서 생산활동을 위한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여 산업단지를 우선 준공하게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준공인가는 실시계획승인과 부합하여야 하고, 진입도로 사업비는 처분계획에 따라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하였으므로 산업단지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진입도로와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사용이 시급한 경우에는 부분준공으로 사용하도록 했었어야 함에도 산업단지만 준공인가 함으로써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하여 약 5년간 진입도로 개설을하지 않고 있는 등 준공인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제48조(감독)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 가볍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산업용지 처분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은 당시 업무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 등 미숙했던 점을 인정한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어촌도로 비관리청 허가 구간 방치에 대하여도 함안군에서는 수차례 독려와 조치계획 수립 제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행보증금이나 원상복구 예치금 등이 없고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미조치 되어 있는 상태이나 피허가자가 매입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후 사업시행 독려와 시행 불가 시허가 취소하는 등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현 ☆☆☆☆☆) 전 실무담당자인 ▽▽▽▽ ▲▲▲(현 ▼▼▼▼▼), 실무담당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전 실무책임자 ○○○○○ ◀◀◀(현 ▷▷▷▷▷)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6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사유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이를 승진, 포상 등을위한 인사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②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과 다르게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인가 등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준공인가 이후 진입도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근거가 없음에도 연장처리 해 주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현 ☆☆☆☆☆) 전 실무담당자 ▽▽▽▽▲▲▲▲(현 ▼▼▼▼▼), ▽▽▽▽ ▶▶▶(현 수수수수), ♣♣♣♠ ○○○(현 수수수수), 현 실무담당자 ▽▽▽▽ ○○○와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소홀히 한 ○○○○○(현 ☆☆☆☆☆) 전 실무책임자 ○○○○ 수수수수의 관심 수수수수의 한 실무책임자 ○○○○○(현 ☆☆☆☆☆) 전 실무책임자 수♠♠ 수 육육수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 수리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현 ☆☆☆☆☆) 전 실무담당자 ♣♣♣♣ ●●●(현 ■■ 정하게 처리한 ○○○○○○(현 ☆☆☆☆☆) 전 실무담당자 ♣♣♣♣ ●●●(현 ■■ 절무책임자 ◆◆◆◆

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및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농어촌도로 비관리청 허가사항 조치를 미이행토록 방치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
★★ 전 실무담당자 ♣♠♠♠ ①①①(현 ♥♥♥♥사업소), ▽▽▽▽ ♨♨♨(현
★★면사무소), 현 실무담당자 ▽▽▽▽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 전 실무책임자 ♠♠♠♠ ☎☎☎(현 ♥♥♥♥사업소), 현 실무책임자 ♠♠♠♠ ☎☎☎(현 ♥♥♥♥사업소), 현 실무책임자 ♠♠♠♠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 (훈계)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농어촌도로 비관리청 허가 구간에 대하여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허가 조건 등을 검토하여 함안군의 의견에 따라 편입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 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⑤ 아울러, 산업단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산업단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산업용지 등을 불법 매각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 대상 사업 인·허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 ★★★ ★★★★★★★ 번지 일원에 아래 표의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 등 10차에 걸쳐 단독주택 개발에 대하 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수리를 하였음

#### 【주택단지 건축(개발행위)허가 현황(종합감사일 기준)】

구분	접수일*	허가일*	7	개발면적(m	2)	단독주택	용도지역	비고
(허가자)	1 11 日	(최초 허가일)	소계	대지	도로	(호)		
	합계(33건)		45,603	40,272	5,331	77		000 관련 36가구
1차	(17.10.17. (16. 6.21.)	'17.11. 8. ('16. 7.14.)	9,669	7,872	1,797	14	계획관리	000
2차	'16. 4. 7.	'17. 9.15. (16. 5.18.)	4,506	4,193	313	9	"	
3차	'16.12. 5.	(17. 1.19.)	4,938	3,512	1,426	8	"	
4차	<b>'</b> 17. 1. 5.	'19. 4.24 (17. 3. 6.)	4,607	4,607	_	6	"	
5차	'17. 4.24.	'18. 3.25. ('17. 5.18.)	4,127	3,953	174	8	"	
6차	'17. 5.22.	'17. 6.19.	3,527	3,304	223	5	"	
7차	'17.11.6.	(19. 1. 3. (18. 3. 6.)	4,630	4,098	532	8	"	000 사내이사
8차	'18. 5. 1.	'18. 8.20. ('18. 5.18.)	6,300	5,825	475	12	"	000 + 사내이사
9차	'18. 6.19.	'18.11. 5. ('18. 7.17.)	1,698	1,307	391	4	"	000 + 사내이사
10차	'18. 6.20.	'18. 7.17.	1,601	1,601	_	3	"	000

출처)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 대상 사업을 개발행위허가 하는 등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택법」제2조(정의)에서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택법」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에는 연간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를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면적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요건을 모두갖추어야 한다.

같은 법 제102조(벌칙)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제33조(보안등), 제38조(폐기물 보관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57조(간선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간선시설)에 따라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보안등을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 시설)을 1개소 설치하여야 하고, 간선 시설인 진입도로, 상하수도시설(상수도 :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 이상 공급, 하수도 :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 이상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36조(벌칙) 및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1)는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 ★★★ ★★★★★★★★ 변지 일원에 주택건립을 목적으로 2016. 7.14.부터 현재까지 건축신고 33건(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수리 하였으며,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상기 ●●● ●●● 주택단지 건축(개발행위)허가 현황과 같이총 부지면적 45,628㎡에 77가구를 건립 중에 있다.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19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에는 연간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sup>31)</sup>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서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u>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u>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를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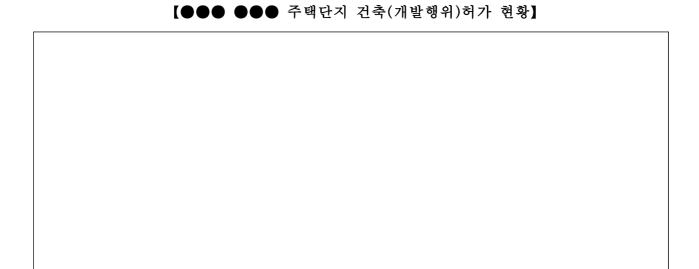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개인인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면적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안군에서는 건축신고 건 중 ㈜○○○와 ㈜○○○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등 등록기준을 초과하여 개발면적 16,599㎡에 27가구, ◎◎◎은 4,706㎡에 9가구를 각각 신고하여 수리 되었다.

함안군에서는 ㈜이이이와 ◎◎◎의 건을 별개로 보아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간 20호 및 대지조성면적 1만제곱미터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허가로 판단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개발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최초 ㈜〇〇〇에서 2016. 7.14.자 건축신고하고 이후 2017.11.8.에 설계변경(개발면적 9,669㎡, 14가구)을 득한 후 5차례에 걸쳐 건축신고가 추가로 신청되었음에도 함안군에서는 당초 허가부지와 연접하지 않았고, 도로개설 부분으로 구분된 토지로서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한 자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사업을 부당하게 개별 건축신고를 득하도록 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주택법에 따라 ※※※※※※※ 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택사업계획 승인 없이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주택건설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간선시설인 진입도로,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보안등 등의 설치 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아래와 같이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3. 건축신고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협의)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대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등 기준에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및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다음 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의제1호마목에서 기반시설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3)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고, 같은 지침 3-2-5(기반시설) 제(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제58조(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 및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관리지역 3만㎡미만)"에 적합할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하여야 하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함안군 도시계획 조례」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계획관리지역 3만㎡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 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32)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행위 규모가 5천㎡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국토계획법」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에서는 상기 ●●● ●●● 주택단지 건축(개발행위)허가 현황과 같이 ★★★ ★★★ ★★★★★★★★ # 번지 일원에 주택건립 목적으로 2016. 7.14. 부터 2018. 7.17.까지 10차에 걸쳐 신축신고 한 33건(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 부지면적 45,628제곱미터 77가구에 대하여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협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 주변지역에 따라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게 계획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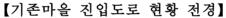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진입도로는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에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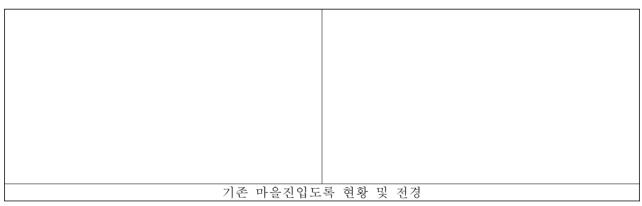
<sup>32) 「</sup>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5,000㎡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으로서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의 진입도로 개설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으로 적정폭을 확보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에 따라 개발행허가(협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함안군에서는 최초 2016. 7.14. ㈜〇〇〇에서 개발행위허가 협의 신청시개발행위 규모가 9,122㎡로 관련규정에 따라 진입도로의 최소 6.0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마을진입도로인 기존도로 4~5m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하였고.

개발행위 규모 전체 면적 45,628㎡ 기준으로는 진입도로 개설을 8m 이상 도로를 확보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마을진입도로인 기존도로 폭 5.0m미만의 진입도로를 활용하여 진입하는 것으로 허가하는 등 개발행위허가(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며,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동산개발업 등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고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통해 판단했어야 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관리청에 귀속하여야 함에도 진입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 무상귀속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주)○○○ 및 ◎◎◎ 주택단지 건축(개발행위)허가 현황】

<sup>33)</sup> 동일사업자 판단 근거

<sup>- ㈜○○○</sup> 대표이사 ◆◆◆, ◎◎◎은 ㈜○○○ 사내이사로 확인됨

#### 4. 건축신고 등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에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및 제61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시기는 [별표 4]와 같고,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서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34)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sup>34) 「</sup>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가. 사업자와「은행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

나.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벌칙) 제2항에서는 제22조 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함안군에서는 ★★★ ★★★ ★★★★★★★ 변지 일원에 개별 건축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개발사업 허가(협의)를 하면서 ㈜○○○ 및 ◎◎◎은 동일한 사업자이며, 사업면적의 합이 21,305㎡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에 해당되어 사업의 허가(협의)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개별 건축으로 판단하여 관련 부서(환경)에 통보하지 않고 건축허가 함으로써 관련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련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 ① 관련자 주장 및 파단

함안군 관련자 개발행위분야 전 실무담당자 □□□□ ■■■(현 △△△사업소) 과 건축분야 전 실무담당자 ▲▲▲▲ ▽▽▽(현 ▼▼▼▼▼)의 문답결과 고의 성은 없고 업무 미숙과 법령연찬 부족에서 발생되었음으로 업무담당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②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함안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함안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함안군 ★★★ ★★★ ★★★★★★★ 번지 일원에 주택법에 따른 ※

※※※※※※ 대상 사업을 개별 건축신고 수리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진입도로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에

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협의) 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소홀로

관련 기준에 미달함에도 허가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인 계획관리지역 1만㎡이상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 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이 인정
되므로 공무원으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징계요구 양정** 업무담당자로서 ※※※※※※※ 대상 사업 인·허가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 한 §§§§§§ 개발행위분야 전 실무담당자 ◁◁◁◁◁ ■■■ (현 △△△△사업소)과 건축분야 전 실무담당자 ◀◀◀◀◀보 ▽▽▽(현 ▼▼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함안군 ★★★ ★★★ ★★★★★★★★ 변지 일원에 주택법에 따른 ※※※※※ ※※※ 대상 사업을 개별 건축신고 수리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규모와 진입도로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허가(협의) 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검토소홀로 관련 기준에 미달함에도 허가를 부적정하게 하였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계획관리지역 1만㎡이상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미이행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업무담당자인 \$\$\$\$\$\$\$ 개발행위분야 전 실무담당자 □□□□ ■■■(현 △△△사업소)과 건축분야 전 실무담당자 ▲▲▲▲ ▽▽▽(현 ▼▼▼▼▼)에게 관련 법령 검토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에 따라 각각「경징계」를 요구한다. (경징계)

☆☆), ■■■■ ●●(현 ☆☆☆☆)에게 그 책임을 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 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 (훈계)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국토계획법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일련번호 : 2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회수·시정요구

제 목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공 사 명	위 치	공 사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시행자	공사기간	비 고 (현공정)
※※※ 생태하천 복원사업	○○ 일원	- 생태하천 복원 L=7.36km	49,806	★★★★★ (위·수탁)	2018.~ 2023.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

## 2. ※※※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 관련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계약의 원칙)의 규정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 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및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법」제17조(사업) 제1항에 공단은 <u>생태하천 조성·복원사업 및</u> <u>기술지원</u>을 할 수 있고, 제2항에는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촉진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홍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35)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36)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

<sup>35)</sup>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공사

<sup>1.</sup>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sup>2.</sup> 발주청의 기술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sup>3.</sup>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sup>36)</s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1.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sup>2.</sup>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

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2장제5조(사업관리방식의 검토 및 절차)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기본구상 단계에서 이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성 및 사업관리에 필요한 소요인력에 대한 발주청의역량을 검토한 후 사업관리방식의 순차적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특성과 발주청의역량에 맞는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별사업관리방식 확정은 본 지침 제8조(사업관리방식 확정)에 따라 총 소요인력 검토결과 사업관리 가용인력과 비교하여 소요인력이 가용인력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사업관리방식을 조정하여 발주청의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는 사업관리방식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본 지침 제7조(사업관리방식 배정)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관리 소요인력 중 20%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은 「※※※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의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안)을 ☆☆☆☆☆-\*\*\*\*\*호(2017.9.14.) 로 방침을 살펴보면 ★★★★★★ 위탁 사유로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 경부 6차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중 일부로 수질개선 및 환경분야 사업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sup>3.</sup>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의 비중(80%)이 높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험, 전문인력 및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기관에 위·수탁 시행으로 사업추진 효율성 및 사업효과 극대화 하고, 전면책임감리 선정에 따른 감리비(위·수탁 수수료) 비교 검토를 하고 직접시행시 감리비약 21.5억원 정도로 위·수탁 수수료는 17.5억원 정도로약 4억원 정도예산이 절감이 되고, 위·수탁 대행가능 기관으로 ★★★★★(환경부)과 ○○○○(국토부)중 ★★★★★★법 제17조와 함안군과 ★★★★★ 업무협약(2016.5.3)을 근거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담당부서 종합의견으로 ※※※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련분야의 다양한 시공겸험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며, 시공 후 복원효과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고, 생태하천복원사업(하수처리・관거 등)의 환경부 기본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기관이며, 설계 및 시공, 사업변경시 환경부와 협의가 용이하고 그 간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이 축적 되어 있는 ★★★★★★에 위・수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및 방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추진의 원칙은 시행청에서 직접시행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에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법에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함안군에서는 위·수탁 관련 근거로 「★★★★★★법」 제17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제17조는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u>생태하천 조성·복원사업</u>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에 수의계약 및 위·수탁이 가능하다는 강제규정이 아님에도 ★★★★★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함안군과 ★★★★★★ 업무협약서(MOU)에도 협력분야로 온실가스감축, 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과 환경보전 활동,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등 모니터링 및 진단・지원, 환경교육과 환경보전프로그램 운영,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시설의 설치지원, 토양, 지하수 환경의 조사 및 정화사업관리, 수도시설설치・운영 및 진단・지원, 기타 상생 협력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한다고 업무협약 되어 있으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수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하여 부적정하게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우수한 품질확보 및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기본구상단계 등에서 본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거나 담당부서 기술직공무원에게 직접 공사감독하게 하는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하천공사는 의무적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가 아니고, 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발주부서 인력부족에 따른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공사인지 등을 판단하여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이나 사업관리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감리비와 위·수탁수료를 비교하여 오히려 위·수탁 수수료 비용만큼 소요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3. 토지보상금 지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공익사업)에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에는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협의)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면 같은 법 제20조(사업인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수탁 협약서(안)(이하 "협약서"라고 한다.)」 제3조(의무)에는 '지자체장'과 '이사장'의 임무에 '지자체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 확보(용지보상 포함)와 '이사장'은 '지자체장'의 제반 인·허가사항 및 보상업무에 필요한 지원으로 각각 임무를 구분하고 있다.

같은 협약서 제5조(사업비 등)의 사업비 범위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공사비, 위탁수수료,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예비비, 기타 부대비, 환경영향 평가 등 관련 용역비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같은 협약서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이 협약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지자체장'과 '이사장'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이사장'은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 동안의 소요된 사업비와 수수료를 일괄 정산하고, 그 정산서류를 제15조제2항과 같이 '지자체장' 에게 제출하도록 협약 되어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 하거나 사용하려면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반영한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여야 함에도 함안군에서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협의 및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절차를 득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보상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협약서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임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 확보(용지보상 포함)를 하도록 협약체결 되어 있고, 협약서 제5조에 따른 사업비에도 사업비 범위를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비, 공사비, 위탁수수료,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예비비, 기타 부대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비로 범위를 정하여 협약되어 있다.

그런데도, 함안군 ☆☆☆☆☆에서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예산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그 결과 ★★★★★★으로 보조금을 자본이전 하였으며, 그 결과 ★★★★★★에서 보상금 지급하도록 요청 하는 등 협약서와 다르게 약 100억 원을 부적정하게 ★★★★★

#### 관련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함안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답변하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토지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함안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과 위·수탁 협약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함안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안군 $( \diamondsuit \Leftrightarrow \diamondsuit \Leftrightarrow \diamondsuit \Leftrightarrow , \star \star \star \star \star \star )$ 

조 치 기 관 함안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함안군 ★★★★★에서 추진 중인 「※※※※※ 정비공사」를 위해 \*\*시 소재 ㈜○○(대표 ●●●)과 2019. 4. 29. 도급액 4,901백만 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5. 3. 착공하고, 2020. 3. 23. 총괄 제2회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5,395백만 원으로 변경계약하여 2021. 6.24.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위 치	공 사 내 용	공사비(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5 N 3			계	도급	관급	- 등사기선	(현공정)
※※※※ 정비공사	함안 ○○	- 소하천정비 (L=2.27km)	7,205	5,395	1,810	2019. 5. 3. ~ 2021. 6.24.	35%

#### 2. 하도급관리계획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 미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절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에서 시행중인 「※※※※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본 공사시행을 위한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하였으며, 적격심사(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시소재 (주)○○ 대표자 ●●●과 계약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다.

#### 가. 하도급관리계획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미승인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하도급 현황								
공사명 도급자 도급액		도급액	당초			변경				비고	
			공종	금액	율(%)	하도급자	공종	금액	율(%)	하도급자	

※ 자료 :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본 공사의 도급자 (주)○○에서 「※※※※※ 정비공사」의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토공은 (주)◎◎◎◎, 철콘은 (주)◎◎◎○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주)○○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가 당초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토공은 (주)◎◎◎◎과 철콘은 (주)◎◎◎◎에 각각 하도급체결하고 2019. 6.25. ○○과에 제출하였음에도 ☆☆☆☆에서는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중 하도급관리계획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해당하며,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개월 이상 3개월미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3. 설계도서 검토소홀 등 공사감독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예규 제6절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안군 ★★★★★는 「※※※※※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 하여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 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호안공 호안블럭에 잔디(줄떼)를 식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자연 식생이 가능하므로 잔디 식재가 불필요 한데도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어 약 61,684천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등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예산절감요인에 대한 공사비 조정내역

 구 분	내 용		비고		
ТЕ	네 <del>용</del>	당 초	조 정	증 감	n 1 16
계		238,833	177,149	△61,684	
호안공	호안블럭 잔디(줄떼) 식재 제외	238,833	177,149	감61,684	과다산정, 예산절감

※ 자료 : 함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 관련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함안군의 질문답변 내용은 고의성은 없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법령 연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함안군의 답변내용과 같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답변하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예산절검 요인에 대하여는 감액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함안군수는

- ① ※※※※※ 정비공사의 하도급계약(변경)통보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누락하여계약이행능력을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함안군 승인 없이 하수급 예정자를 임의로 변경하여하도급 계약을 체결·제출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하도급관리계획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 전 실무담당자 ◇◇◇◇에게 그 책임을물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한다. (훈계)
- ② 소하천 호안블럭에 잔디(줄떼)를 식재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자연식생이 가능하므로 잔디 식재가 불필요 함에도 반영하여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어

약 61,684천 원 상당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④ 아울러,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에 대하여는 하도급관리계획대로 하도급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하도급관리계획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ㅇㅇㅇ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파)

조 치 기 관 □□군(●●●파)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군 ●●●●과는 ◎◎◎ ◆◆◆ 일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 위계획을 입안하여 2016. ××. ××.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 2. 주민제안 동의요건 충족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2-6-4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3)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 (5) 2-6-4.(3)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 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수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 일원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2016. ××. ××.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다.

○○○ ◆◆◆, △△△ 일원은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 관리와 주택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생산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3. ××. ××.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주)(대표 AAA)는 2016. ××. ××. 아파트 건립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 ○○ ○○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군은 제안서 검토후 타당성을 인정하고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입안 서류를 제출할 것을 2016. ××. ××. ▽▽▽▽▽(주)에 요청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6-4-(3)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 제외)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이 제출한 주민제안서에는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36,415㎡에 해당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만 동의서가 제출되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군은 이를 수용함으로써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하는 등 특정업체 및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군관리계획을 부적절하게 결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6-4-(5)에 따라 주민제안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이 제출한 토지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는 전체 구역 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동의하면서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지장(指章) 날인없이 서명하거나 인장(印章)을 날인하였는데도 □□군은 이를 수용하고 입안 결정하는 등「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동의 요건에 대한 검토를 부적절하게 하였다.

#### 2. 사업유보지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 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고,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3-15-1에 따르면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3-15-2에서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 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 는 것이 필요한 경우
-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 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3-15-3에 따르면 순차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이 전체구역면적의 2/3를 초과하지 않을 것
- (2) 전체구역의 개발방향과 특별계획구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 대

하여 간선도로의 노선,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밀도의 규모 및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제시할 것

(3) 대상구역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개발완료 시점에서 초등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완료가 전제될 것

따라서, □□군수는 특별계획구역의 취지에 맞도록 입안을 결정하여야 하고, 순차개발을 위해 지정할 경우 전체구역의 개발방향과 조화되는 개략적인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 △△△ 일원에 대해 복합적 개발, 상세한 입체계획 수립, 현상설계 및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결정 사유서에서 단계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유보지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적합한 계획 수립없이 인접주택지와 연계성 확보(아파트 건립)를 위해 종 상향(제1종일반주거→제2종일반주거)의 내용만을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특별계획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15-3에 따라 순차개발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구역의 개발방향과 특별계획구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간선도로의 노선,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밀도의 규모 및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제시하여야 하는데도 당해 특별계획구역에는 간선도로의 노선 및 녹지의 비율이 제시되지 않은 채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 지역에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2013. ××. ××. 최초 지정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력이 2016. ××. ××.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6. ××. ××.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하여 기반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였다.

# 3.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지연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고시 등)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리고, 같은법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수는 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면 지체없이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16. ××.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지체없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은 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만으로 지형 도면 작성·고시를 1년 10개월 지연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 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다.

□□ ●●●● 지역주택조합이 2017. ××.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군 ●●●●● 과는 지형도면이 작성·고시되지 않아 주택건설사업이불가능한 당해 지역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적합하다고 검토하였으나,이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사업주체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하는 시점에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군은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사업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부적절하게 지연 처리였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실효될 경우 소규모 난개발 등으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불부합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사업유보지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방지하고자 했다면 □□군이 직접 사업유보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최소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인정 하기 어렵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 '2~4'와 같이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검토를 부적절하게 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지연한 실무담당자 BBB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CCC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아울러,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Delta$  관 기 관  $\bigcirc\bigcirc\bigcirc$ 군 $(\triangle\triangle\triangle\triangle\triangle$ ,  $\bigcirc\bigcirc\bigcirc\bigcirc\bigcirc\bigcirc\bigcirc$ 

조 치 기 관 ○○군(△△△△△,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군 △△△△△○○○○○□□□□□ 조성사업」을 위해 ▽▽시 소재 ㈜◎◎(대 표 AAA)외 1개사와 2019. ××. ××. ○○백만원에 계약하고 2019. ××. ××. 착공 후 2020. ××. ××. 제1회 설계변경 시 도급액 ○,○○○백만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20. ××. ××.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임.

#### 2.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시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하여야 하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규정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수는 역사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와 위치가 변경될 경우 군관리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건축협의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 □□□□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 ●●(대표 BBB)외 3개사와 ○○○천 원에 계약하여 2018. ××. ××. ~ 2019. ××. ××. 기간 동안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9. ××. ××. 최초 건축허가(협의)하였다.

착공이후 건축물 규모 및 위치변경을 위해 2019. ××. ××. '○○ □□□□ 조성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세부현황은 [표1] 과 같다.

그런데. ○○군 △△△△△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구조체 공사를 2020. ××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구조체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기 직전인 2020. ××. ××. 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였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군 △△△△△이 '군관리계획(시설:역사 공원) 결정 및 군계획시설(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2020. ××. ××. ●●●●●에 신청하였으나, ●●●●●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관리동 등 공원 세부시설의 규모와 위치 변경이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잘못판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주민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이로인해 절차에 흠결이 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2020. ××. ××. 군관리계획으로 최종 결정·고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건축규모 및 위치이동을 위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건축법」 규정에 따라 변경 시공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은 관리동 연면적이 ○○㎡에서 ○○○㎡로 당초 대비 약 58% 증가하였으나, 공사업체에게 선공사를 시행하도록 구두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축협의(변경)은 2020. ××. ××. 요청하여 구조체 공사가 완료된 이후 2020. ××. ××. 건축허가 변경이 완료되는 등 공원조성계획,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변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용건축물을 건축하였다.

#### 3. 실시설계 용역 추가 발주 및 과다한 설계변경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문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르면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감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정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가격정보,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계약금액의 조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는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우선 시공할 경우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 착공이후 건축물 위치변경 및 건축공간 확충을 위해 ㈜ (취) (대표 MMM) 의 1개사와 용역비 20,220천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군계획시설(역사 공원:□□□□)사업 실시설계(변경)용역」을 2019. ××. ××. ~ 2020. ××. ××. 기간 동안 추가 시행하였다.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최초 ㈜ ● (대표 CCC)외 3개사와 ○○○○천 원에 계약하여 2019. ××. ××. 준공되었으나, ○○ 군은 공사 착공이후 관리동 및 □□□□□□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설계 용역을 재시행함으로써 예산 ○○○천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시설계(변경)용역 이후 ○○군은 2019. ××. ××. 제1회 설계변경을 시행하였고 변경된 공사내용은 [표2]와 같다.

제1회 설계변경 시 도급공사가 〇〇〇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 도급공사비의 52%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동 내 공방작업실을 당초 25인에서 50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비용이 〇〇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단열재 종류를 불필요하게 변경하고 벽·바닥 마감재를 화강석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순공사비가 약 〇〇백만원 증가하였다.

그리고, □□□□□ 내 ◇◇전시관공사의 경우에는 ◇◇ 규모(7m × 2m)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전통방식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군 관내업체의 견적서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당초 공사비 대비 8배가 증가(약 ○○백만원 증액)하였다.

특히, 견적서에 포함된 점토의 단가가 1㎡당 539천 원으로 과다하게 반영되었고, ◇◇축조 및 조경인건비가 시중노임단가의 2배인 383~400천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재료 및 노무량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단가산출근거가 부적합하게 작성 제출되어 ◇◇전시관공사 설계금액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도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착공이후 불가피하게 관리동 및 □□□□□의 규모를 증가하여야 했다면 설계변경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군은 내·외부 마감재 및 ◇◇전시관의 설계변경을 과다하게 시행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해야 하는 공사관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군은 공사추진 시 설계내역의 적합 여부 및 시공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도록 추진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아래 [표4]과 같이 「○○ □□□□□ 조성공사」 가설공사, 정화조 설치 및 토공사에 과다 계상된 공사비 ○○○천 원 상당에 대하여 정산 후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관련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〇〇군수는

- ① 위 '2~3'과 같이 「○○ □□□□ 조성사업」 착공이후 건축물 규모 및 위치 변경을 위해 설계용역 추가발주, 행정절차 이행없이 공사 시행 및 과다한 설계 변경 추진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실무담당자 DDD 및 EEE와 실무담당(책임)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FFF, GGG 및 감독책임자 HHH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경상남도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위 '2'와 같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미이행한 실무담당자 III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

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JJJ 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③ 아울러, 과다 계상된 공사비 ○○○천 원 상당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라 감액하시고,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 부대시설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ㅇㅇ군(△△△△△)

조 치 기 관 ㅇㅇ군(△△△△△)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2. 건축허가(협의)없이 공용건축물 공사 시행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군수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전에 허가권자와 협의함으로써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군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사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 착공이후 1.5개월이 경과한 2019. 11. 11. 건축 허가를 득하였다.

◎◎◎◎◎(대표 BBB)는 ○○군과 건축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9. ××. ××. ~ 2019. ××. ××. 기간 동안 건축 감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제출한 감리완료 보고서를 살펴보면 건축 허가할 당시(2019. ××. ××.)에 이미 지붕슬래브배근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군은 공용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건축허가(협의)를 득하지 않고 우선 시공하여 구조체 공사를 완료하는 등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부적절하게 시행하였다.

#### 3. 공사완료 통보. 건축물대장 작성 및 등기 절차 미이행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등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공부 등록 등)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6조(등기·등록 등) 규정에 따르면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수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준공이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건축물이 준공되면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후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보존 등기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당초 ○○□□□□□□ 부대시설은 지상2층, 연면적 322㎡로 설계되어 건축 허가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과 간섭됨에 따라 지상1층 182.6㎡를 157.8㎡ (감 24.8㎡)로 축소하여 준공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공사 중 일괄신고 대상 규모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공사 완료이후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군은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일괄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공용건축물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군은 준공이후 일괄변경 신고사항을 포함한 건축물 공사 완료 통보를 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5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방치하였다.

<sup>37) ◆◆◆◆</sup> 과-×××호(2019. ××. ××.)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 인계 미흡으로 공사완료 통보, 건축물대장 생성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실시 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일련번호: 3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등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군은 2017. 6. ~ 2020. 6. 기간 동안 총 27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운영 하였다.

#### 2. 불가피한 사유없이 서면심의 개최 등 건축위원회 운영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등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카목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표2] 건축위원회 운영 절차



출처)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재구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2.5에 따르면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3에서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9.5에서 위원회 심의후 7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군 건축조례」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6항 규정에 따르면 군수가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 등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원들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는 조례의 제·개정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및 「○○군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군수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심의로 운영하여야 하고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 국한하여 서면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군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 등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은 2017. 6월~2020. 6월까지 27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이 아닌데도 출석심 의로 개최하지 않고 26건을 서면심의로 처리하여 심의위원 상호간 토론과 의견개 진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원칙을 위반하여 위원회를 운영한 한 사실이 있다.

특히, 2018. ××월 및 2019. ××월 건축조례 개정 건의 경우 건축위원회 결과에 따라 향후 타 건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안건으로 출석심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로 운영함으로써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회의록 작성이 생략되었고, 2019. ××월 ○○읍 ○○리 공동주택 구조심의 등 8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 기간을 20일~65일까지 지정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방법에 대한 군수의 검토 및 결정없이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또한, ◆◆◆◆ 과 ○○○○○ 담당은 건축조례 제·개정 및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27건의 건축심의 안건 중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한 3건에 대해서만 건축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였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 과 내허가담당자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을 각각 주관하였다. 이로 인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위반하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 담당은 현황을 파악하거나 시정·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건축위원회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치하고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라 법령 등 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군은 27건의 심의결과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3.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없이 구조심의 운영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2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고, 「○○군 건축조례」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4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2.4 규정에 따르면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10에 따르면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보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군수는 구조안전심의를 위해 5명이상의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군은「건축법」,「건축위원회 심의기준」및「○○군 건축조례」규정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하의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에 대해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군은 2015. 7. 7. 건축법령 개정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심의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시까지 기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sup>38)</sup>하였으나 구성을 추진하지 않았고, 2016. ××. 및 2019. ××. 각각 3년 임기의 건축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하는 시기에도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건축허가 담당자가 필요시 개별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감사일 현재까지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중 3~6명을 선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를 진행하는 등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구조분야 전문위원은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교수 등으로 위원을 선정하여야 했는데도 매 심의 때마다 건축계획분야 위원에 해당하는

<sup>38)</sup>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구조 심의」처리방안 보고(○○○○○과-\*\*\*\*\*, 20\*\*.\*.\*\*.)

건축사 2명을 포함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건축허가 부서의 업무가 과다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관리를 이원화하여 이 건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건축 위원회 운영·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위 '2~3'과 같이 허가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묵인하고,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실무담당(책임)자 AAA 및 BBB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하도록「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위 '2'와 같이 서면 심의기간을 1개월 이상 지정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서면심의로 운영한 실무담당자 CCC 및 DDD와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EEE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위반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향후 업무 추진에대해 신중을 기하도록「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각각『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건축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하고, 「건축법」및「〇〇군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